
장애인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3차 토론회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쟁점과 대안

일 시 Ⅵ 2004. 12. 16(목) 14:00

장 소 Ⅵ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쟁점과 대안

일 정 표

14:00 - 14:05	개 회	사 회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14:05 - 14:10	인 사 말	
14:10 - 14:15	참석자 소개	사 회
14:15 - 14:35	발 제 1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실태와 개선대책 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연구사)
14:35 - 14:55	발 제 2	장애인 평생교육:장애성인 교육의 현황·과제 및 대책 정동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14:55 - 15:15	발 제 3	전국장애인야간학교협의회 필요성과 결성 오용균 (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
15:15 - 15:25	휴 식	
15:25 - 16:25	토 론 (각 7 분)	- 장애인학생을 위한 대학의 재구조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장애성인 평생교육 신창현 (시각장애인 아카데미)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계 개선 이옥경 (연세대학교 장애학생담당 학사지도교수) - 시각 장애 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과제 안승준 (한국 시각장애인대학생회) - 청각대학생 학습실태와 대안 정민자 (한국 농아대학생연합회) -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이흥호 (노들야학) - 장애인 성인교육(평생교육 및 야학을 중심으로) 정인숙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 장애인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활성을 위한 국가정책 정동일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16:25 - 17:00	종합토론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쟁점과 대안

목 차

발	제 1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실태와 개선대책	1
		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연구사)	
발	제 2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성인 교육의 현황·과제 및 대책	11
		정동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발	제 3	전국장애인야간학교협회의 필요성과 결성	96
		오용균 (장애인야학협회의 대표)	
토	론	장애인학생을 위한 대학의 재구조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119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장애성인 평생교육	101
		신창현 (시각장애인 아카데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계 개선	107
		이옥경 (연세대학교 장애학생담당 학사지도교수)	
		시각 장애 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과제	15
		안승준 (한국 시각장애인대학생회)	
		청각대학생 학습실태와 대안	121
		정민자 (한국 농아대학생연합회)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71
		이흥호 (노들야학)	
		장애인 성인교육(평생교육 및 야학을 중심으로)	91
		정인숙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장애인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활성을 위한 국가정책	8
		정동일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실태와 개선대책

김 주 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연구사)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실태와 개선 대책

김 주 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연구사)

1995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그동안 높게만 여겨져 왔던 대학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장애인들도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 전기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의 통계가 없어 알 수는 없지만, 1995년부터 10년 동안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장애학생 수는 총 3,574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수치가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시행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과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별전형제도와 함께 355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 또한 수많은 물리적, 제도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대학에서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캠퍼스의 이동과 접근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 교수-학습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보상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이러한 지원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는 특별전형제도 실시 대학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72개 대학에 머물고 있어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고등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단체, 국회 등 각계의 관심과 개선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재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제17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교육권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마련 토론회'를 갖고 장애인의 고등교

육 현황과 개선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난 9월 의원 모임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현황과 개선 대책을 가지고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 논의하고자 한다.

1. 특별전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9년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자복지대책 공청회”에서 특수 교육 진흥 방안의 하나로 “장애자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아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일정 비율의 수학능력이 있는 장애자에게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김승국, 1989)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 1월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원 외 특별입학 제도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같은 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는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6항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160조 제2항의 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을 개정하는 한편,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의 제5호를 신설함으로써(1994. 10. 15.), 1995학년도부터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특별전형을 이끌어 낸 동인은 무엇보다 장애인의 대학 취학률이 낮았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문직이나 사회 지도층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음에 따라 그들의 이익을 스스로 대변하거나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전형 제도의 실시 계획이 발표되자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입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다(함께걸음, 1994.9). 당시만 해도 장애인의 진학률이 낮았던 근본 이유는 (1)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대학수학능력을 쌓을만한 충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2) 입시제도 자체가 장애인에게 불리하며, (3)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마땅히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고 파악된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도 여느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사전 교육환경(고등학교 과정까지의)을 마련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대학 선발 과정을 개발하며, 장애인이 활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 내의 물리적, 제도적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고등교육 욕구를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특별전형으로 대학의 문턱만 낮추어 놓을 경우, 우선은 장애인의 진학률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되겠지만, 앞서 지적된 원인들을 개선하려는 이제까지의 의지마저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장애학생들을 정원 외로 선발할 경우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기보다는 오히려 열외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가. 특별전형제도의 현황

<표 1>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현황

(단위 : 학교수/학생수)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대 학	실시 대학	6	16	30	39	40	48	43	46	47	49
	입학 학생수	107	201	234	298	349	313	360	420	320	309
전문대학	실시 대학	2	2	6	6	6	9	14	21	22	23
	입학 학생수	6	16	42	57	47	55	61	142	122	115
계	실시 대학수	8	18	36	45	46	57	57	67	69	72
	입학 학생수	113	217	276	355	396	368	421	562	442	424

※ 자료의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6.).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안). 13쪽.

이 제도는 1995학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1994. 12. 15.),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과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입학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에 따른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1998년까지는 신청인이 제반 서류를 구비한 후 국립특수교육원에 직접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 선정되어야 특별전형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선정절차가 8단계나 되어 번거로우며, 기회를 놓칠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교육부, 1999)는 시행상의 불편이 있어, 1999학년도부터는 대학의 장이 직접 선정토록 하였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 시행으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생은 총 3,574명으로 자세한 현황은 <표 1>과 같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대학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기로 한 장애학생 모집정원은 많은 격차가 있다. 표 2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1996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4년제 대학(개방대학 포함)의 연도별 모집정원을 살펴보면 1998년 1,159명을 정점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또 매년 늘어나던 장애학생들의 입학비율도 1999학년도에 33.6%를 정점으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특별전형을 통한 장애학생의 입학 비율이 모집정원의 65% 이상 미달사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정하면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학교가 요구하는 자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학교들은 모집정원만을 규정해 놓은 채 소극적인 선발정책을 펴 고등교육의 기회를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헬레나, 2000).

<표 2> 연도별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비율

(단위 : 명, %)

학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모집정원		978	1,109	1,159	1,039	986	1,073
입학생수	107	201	234	298	349	313	360
입학생(%)		20.6	21.1	25.7	33.6	31.7	33.6

※ 자료의 출처 :

1. 1995학년도의 모집정원수는 1994년 12월 일자 '장애인복지신문' 기사를 참조한 것임.
2. 1996-2001학년도의 모집정원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된 해당 연도의 "대학 신입생 입시요강"을 참조하였으나, 1998학년도까지의 자료는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대학들이 있어 연구자가 임의로 추정한 수치임을 밝힘.
3. 1995-2001학년도의 입학생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22쪽)의 자료를 참조하였음.

나. 특별전형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1) 특별전형 제도의 효과

윤점룡·김주영(2002)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긍정적 효과로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과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대학 사회의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연구에 참여한 특별전형 입학 장애학생들은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장애인에게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을 가져다주었으며, 중증장애인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었고,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로 인해 전문직종의 진출 기회를 넓혀 장애인의 사회적 신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은 물론, 장애인에게 대학교육 자체가 주는 통합의 경험과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같은 조사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장애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나 대학의 지원 준비 없이 받기만 하여 장애학생들의 차별감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졸업 후의 대책 마련이 없는 입학 허용으로 고급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도 지배적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혜를 받고 들어왔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장애학생들에게 자격지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견해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그 당사자인 장애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으나 비판적인 평가의 지지도가 다소 우세해 보인다. 특히, 대학의 준비 부족과 사회의 수용 태도 미비로 인해 차별과 고급실업자 양산이라는 비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는 관계없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얻게 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이전까지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던 대학에서의 교육차별이 대학사회는 물론 국가 교육정책의 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학들 가운데는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학생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대구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나사렛대학교의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독립부서가 아니더라도 담당 인력을 배치하거나, 지원업무를 배분하는 등 조직을 새롭게 확대함으로써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일반고등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교육진흥정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교육부, 1996) 직접 국립대학(“한국재활복지대학” 경기도

평택시 소재, 2002년 개교)을 설립함으로써,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2) 특별전형 제도의 문제점

본 연구의 일환인 심층면담과 두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 그리고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욕구조사⁴⁾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그 하나는 선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며, 다른 하나는 학업능력의 하향 평준화이다. 전자가 결과론적인 문제라면 후자는 앞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원인론적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권침해의 문제는 원인을 찾아 치유하면 될 것이지만, 후자는 그 원인을 알지만 쉽게 철회하기도 힘든 이미 갈대로 간 상황이라 어떻게 하기 힘든 상태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가) 전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는 장애학생을 미리 선별하여 가려 뽑으려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2000)에서 발표한 “무장애대학 만들기(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 대학교 장애인 차별도 인식조사 및 교육 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는 전국의 12개 대학 82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도 인식조사결과가 분석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김형수 등, 2001), 조사에 참여한 상당수의 장애학생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겪는 불이익을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그것을 불이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은 ① 입학과정과 사전면담의 면접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질문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② 원서접수 전 지원계열 학부나 학과의 전환을 권유받거나 강요당함, ③ 원서접수 자체를 거부함, ④ 원서 접수 전 면담을 통해 거부함의 순으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학을 기준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이전까지는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문제 삼다가 장애인 특별전형 이후에는 대학의 장애인 교육 여건에 따라 장애인을 입학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전 지원계열 학부나 학과의 전환을

권유, 또는 강요하거나, 면접에서 사실상 불합격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학생들이 입학과정에서 입학 거부 등의 차별을 받는 가장 큰 요인으로, ① 장애가 너무 심하거나 특정 장애유형(청각, 시각, 휠체어, 뇌성마비)을 이유로 편의시설이 없다거나 교육환경 지원 등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다음은 ② 지원학과(계열, 학부)가 장애를 이유로 졸업 후 취업이 어렵다는 것, ③ 지원학과가 장애를 이유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 이들은 입학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여러 가지 각서나 계약서 등에 서명하거나 제출할 것을 강요받기도 한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장애학생들이 대학과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 장애학생의 입학 여부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것으로 명백한 차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는 특별전형 실시하는 몇 안 되는 국립대학 가운데 한 학교의 전형 요강 내용이다.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중복장애는 제외/본교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신중히 지원하여야 함
- 본 대학교는 현재까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시설이 없으니 해당 지원자는 유념하기 바람에 신체장애가 있는 지원자는 사전에 본 대학교에 설치된 ‘신체장애자 입학상담실’에 상담하여야 한다.
- 신체장애자 입학허가 판단기준<신체장애 정도 적용>(각 1, 2는 입학허가, 3, 4, 5는 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 : 실험, 실습, 학습 환경의 위험도 등 학과의 특성을 고려)
 - 1. 제3자의 도움이 없이도 학습이 가능
 - 2. 학습동료 등 제3자의 부분적인 도움으로 학습이 가능
 - 3. 제3자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수업의 이행 및 수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수학이 불가능한 자
 - 4. 농·맹·아자
 - 5. 기타

이처럼 대학들이 특별전형으로 장애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야기하는 인권침해 요소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각 대학별로 선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장애인 심사위원회’ 등의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한다.
- 검증된 객관적 기준이 아닌 대학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담실에서 사전면접을 거쳐야 한다.
- 사전면접을 통해 '학교에 아무런 교육시설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나 합의서를 요구한다.
- '제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장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입학전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원인을 쉽게 말하자면 어떤 장애인들은 학생으로 받을 경우 학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원 외 특별정책에 대한 이 따르는 데는 정원 내로는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추가 학생의 등록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인을 아무 조건 없이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그들은 대학에 들어오면 교내의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을 보장하거나 고가의 학습보상기자재, 또는 특별한 장비들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이러한 추가부담을 기꺼이 지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그러한 시설을 요구할만한, 그러한 기자재나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할 장애인을 학생으로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지니지 않으면서 장애인인 학생을 받아야만 추가부담 없이 정원 외 특별전형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서 제시한 모 국립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요강에서와 같은 인권침해를 부르는 것이다. 어쩌면 굳이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경쟁을 통해 당당히 들어와야 옳을 경증의 장애학생들이 이들 대학이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 모든 장애학생들이 수학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을 마련할 추가부담을 각오하든지, 국가나 제삼자의 지원으로 그 같은 재원을 확보하든지 해야 할 일이다.

나) 학업능력의 하향 평준화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장애학생들의 학업능력이 하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박찬웅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 장애학생의 18%가 재학 중인 대구대학교 장애학생 입학 성적은 비장애 학생보다 현저히 낮으며, 그 격차도 해마다 점차 커지고 있다. 또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장애학생들의 재학 중 평균 성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비장애학생들과의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 재학 중 학사경고 회수가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별전형 시행 첫해에는 1인당 0.16회이던 것이 점차 그 비율이 높아져 1999년 입학생의

경우 1인당 0.50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장애학생들의 학사경고 횟수는 해가 갈수록 높아 현재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졸업률도 해가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는 학사경고 횟수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1995년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졸업률이 97.7%였던 것이 해마다 감소를 거듭하여 1998년 입학한 장애학생의 경우 52.2%만 졸업해 거의 절반이 휴학 또는 제적되거나 이수학점 미달로 아직 재학 중이라는 점이다.

일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특별전형 제도가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긴장감이나 경쟁의식, 개인의 노력 의지를 약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전형이 일반전형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도를 요구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학업능력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대학에서 학업수행을 하기엔 기초수학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인데도 특별전형을 통해 무난히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자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 중에서도 굳이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이 특별전형으로 일반전형으로 가는 학생들보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학생들도 많다. 처음부터 대학을 생각지도 않던 학생들도 그냥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다) 특수학교의 정체성 상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수학교가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장애대학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2000. 2. 29.)에서조차 특수학교 내에 진학반 설치를 제의하고 있을 정도다(이미 할 곳은 다 하고 있음). 이것은 특수학교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특수학교에서 대학 입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특수학교의 구조적 여건(소수의 교사, 최소화된 교육과정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가르쳐 대학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한 입학이 쉽다는 뜻이다. 이제 생각을 다시 하는 특수학교는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지역사회의 일반학교로 통합시키겠다는 당연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특수학교에 유치하여 입시교육을 시키려 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특수학교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으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은 가능한 한 인근의 일반학교로 보내어 통합교육을 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고 또 그 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로 인해 그러한 노력을 중지한 채 특수학교에서 직접 특별전형을 겨냥한 입시교육에 힘을 쏟게 된 것이다.

그러나 턱없이 적은 교사 인력과 입시교육의 전문성 부재로 특수학교에서 입시교육을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을 전공으로 한 교사들에게 교과 중심의 입시교육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채 일반교사에 비해 실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부모나 학생, 심지어 학교운영자의 질타로 특수교사들은 전문교사로서의 정체감 상실과 자괴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특수학교 교사들이 자기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곧 특수학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다.

라) 통합교육 의지 약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으로 인하여 특수학교에서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실재를 보여줌으로써 장애학생들도 굳이 적응이 힘든 일반 고등학교에 가려하지 않아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일반학교에 가서 동료학생들과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입시교육을 받아야 그만큼 대학진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로 가려하고, 일반학교에 장애학생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기반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동기를 처음부터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세심하게 더 잘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일반학교보다는 특수학교를 선호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 대학생활의 부적응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학업을 쫓아가지 못해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모든 활동에 의기소침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까지 있던 분리된 교육환경에서 부분 통합도 아닌 완전통합 환경으로 하루아침에 달라진 환경에서 겪는 문화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표 3>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0개 4년제 대학에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장애학생 974명 중 18.2%인 177명이 학업부진으로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11.7%인 114명은 휴학을 한 경험이 있고, 5.3%인 52명의 학생들은 중도에 이미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 특히, D대학의 경우 289명 중 32.8%인 95명이 학사경고와 휴

학, 자퇴를 하였으며, K대학의 경우 2000년도 신입생의 62%가 1학기만에 학사경고를 받고 일부는 휴학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비 장애학생들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은 수치이다(양재신, 2000).

<표 3> 1997-2000년 등록 장애학생 수 대비 학과 부적응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등록자수	학과부적응자수				* 부적응비율(%)
		학사경고	휴학	자퇴	계	
1997	196	47	28	19	94	48
1998	227	59	47	16	122	54
1999	269	37	35	16	88	33
2000 (1학기)	282	34	4	1	39	14
계	974	177	114	52	343	35

※ 자료의 출처 : 2000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4년제 대학 30개교)

※ ‘*’은 원 자료에 추가한 내용임

분리교육 환경에서 어떤 중재도 없이 곧장 대학이라는 완전통합 장면에 놓이게 되는 학생들은 충격과 혼란으로 당황하게 된다. 그런 학생들은 비장애 또래와 접촉한 기회가 많이 없어 대인관계에 힘들어한다. 특수학교에서 만나던 교사와는 전혀 태도나 의식이 다른 교수나 강사, 조교와의 관계 설정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웬만큼 자신감이 강하지 않고는 이런 상황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바) 객관적 능력 평가의 기회 박탈

장애인들 가운데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정신적 피해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반전형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 장애인들이다. 그들은 장애인은 모두 ‘실력이 모자라’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도매 신세가 되는 것에 심한 불쾌감을 갖는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심리적인 피해의식이 매우 심각하다. 어쩌면 경증의 장애인들이나 일반학교에서 공부한 장애인들에게는 공부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과소평가하는 주

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는 생애 몇 안 되는 중요한 기회를 잃었다고까지 말한다.

사)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구조적 문제

결국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의 실시로 추구했던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과 그에 따른 계층 상승을 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려던 당초의 목적이 선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학업능력의 하향화라는 암초로 인해 꿈쩍하지 못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과적인 현상의 하나로서 시장논리를 고집하는 대학의 태도와 정의적 논리를 중시하지 못하는 국가 사이의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능력의 하향화 내지는 하향평준화 문제는 그것이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적 성격이 큰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내지 않는 한 그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다.

2.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조차도 학생들의 입학 후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윤점룡, 김주영, 2002),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82%가 대학생활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휴학을 경험 했거나 휴학이나 자퇴를 생각한 학생이 전체의 50%이상이나 되었다.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구성원 등의 태도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교수, 강사 그리고 조교들의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나 일반 행정직원들의 태도에 불만인 학생이 많았다. 그리고 학교 당국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투자와 태도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장애 학생들이 많았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장애학생들이 대학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지원제도와 물리적 편의 제공, 교수-학습 지원, 생활 및 복지 지원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원 제도의 문제점

대학에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거의 없으며(4.8%), 장애 학생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마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다(37.5%). 장애학생을 위한 동료 도우미 제도가 거의 정착되지 않고 있다(25.6%). 대학의 학칙이나 내규에 장애 학생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다(29.3%). 장애 관련 교양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적다(35.0%). 장애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 필요한)를 발간하는 대학이 거의 없다(2.5%).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책이 있더라도 장애학생들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보여주기 식 정책에 불과해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나. 물리적 편의 제공 실태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이 캠퍼스 내 모든 건물에 불편 없이 접근 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43.6%). 대학 내에 점자 유도블록이 거의 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대학이 많다(69.0%). 캠퍼스 내의 경사지나 건물 입구의 계단 대신 경사로, 우회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대학이 많다(38.1%). 강의실에 접근 편의를 위한 자동문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0.0%), 손잡이도 휠체어를 탄 학생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12.5%). 점자로 표시된 강의실 이름 안내판이 없는 대학이 많으며(7.1%), 강의실 출입구 안팎의 점자 블록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4.8%). 강의실 내에 휠체어 장애학생의 좌석 배치를 한 곳이 적으며(16.7%), 노트북이나 녹음기 등을 올려놓기에 충분한 넓이의 책상을 구비한 곳도 많지 않다(42.9%).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장애학생의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점자 안내물 비치 2.5%, 도서 검색을 위한 음성지원 2.5%, 대인 서비스 지원 43.9%, 대리 대출 46.3%, 기간 연장 허용 25.6%,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열람실 및 좌석 배치 22.5%, 휠체어 사용 학생의 서고 출입 26.8% 등). 장애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51.5%). 장애학생들이 전산실(컴퓨터 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31.5%). 모든 대학에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유도 및 안내 시설(14.7%)과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피난 및 대피시설(15.6%)이 부족하다. 장애학생 전용 공중전화기가 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17.7%). 그밖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있더라도 잘못 설치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많고,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주로 지체장애학생 중심으로 되어있을 뿐 시각장

애나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 교수-학습 지원의 문제점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학습기자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29.2%). 강의 장면에서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교수가 많다(57.7%). 매번 동료 학우들에게 자료를 빌리거나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고 미안하다(23.8%).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과제를 내거나 조별 모임을 구성한다(36.7%). 시험 평가 기준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다(32.3%). 시험 답안지 작성이 어려우며(31.5%) 시험 시간이 너무 짧다(24.6%). 강의계획서에 장애학생들이 미리 과제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제 제출 안내를 상세히 제시하지 않는다(20.8%). 교수가 과제를 내기 전 장애학생과 협의하여 수행 가능한 과제로 대체해 주지 않는다(19.2%).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문 수화통역사나 속기사를 강의 시간에 지원해 주지 않는다(21.0%).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재 점역 지원이나 강의록 녹음 체제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며, 점자 프린터를 제공하거나 스크린 확대기 등 기자재 지원이 빈약하다.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노트북 등 학습보상기자재의 제공이 거의 없고(15.8%) 대필 지원 도움 인력도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13.5%). 강의 시 시각적 보조 자료 및 강의 노트를 제공하는 등 장애영역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식을 구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라. 생활 및 복지 지원의 문제점

장애학생이 필요 시 이동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우미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21.1%). 장애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이 거의 없다(15.4%). 장애학생들에게는 근로(아르바이트)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6.2%). 생활 및 복지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상담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39.2%), 장애학생들을 상담 또는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교수도 거의 없다(2.3%). 장애학생들이 대학 측에 건의나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3.9%).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취업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12.6%). 장애인 취업 전담인력을 두지 않고 있으며, 취업 상담과 정보 제공, 취업을 위한 제반 상황에 대해 안내해 주는 경우가 흔치 않다.

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개선 방안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대학의 장애학생 선발과정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등교육 실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대학의 소극적 노력으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발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02년도에 개교한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출범이나 2003년도에 실시한 대학 내 장애인 교육복지 평가를 통해 지난 8월 ‘대학 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은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재활복지대학은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모델 대학으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지원 인력, 보상기자재 등을 두루 갖춘 최초의 대학으로 후발대학들의 장애학생 지원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고등교육기회 확충과 교수-학습 지원, 편의시설 확충의 3개 부문에 대한 9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특별전형제도의 전면적인 제고와 대학 내 지원체제의 현실적 개선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가.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개선

1) 선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해소 방안

선발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경증 장애인 가려 뽑기의 원인으로 대학의 추가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열쇠일 것이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정원 외 선발 과정으로, 농어촌 자녀,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위치에 처한 국민의 고등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대학이 정원 외로 더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정원 외 대상과는 달리 장애인은 경우에 따라 학교가 따로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이 예상되므로

그 재원을 자체 마련하거나 지원받지 않는 한 쉽게 선발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은 장애인들 가운데 추가비용이 요구되지 않을 장애인을 선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반 인권적인 선발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이다. 국가가 정원 외 특별전형의 취지를 충실히 살려 진정으로 대학 입학의 접근이 불리한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대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들을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정해 놓지만 말고, 실제로 대학들이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을 선발하는 학교들에 대해 기본적인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설치비용과 같은 추가부담을 책임지거나 상당부분 나누어 부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을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여 정원 외 특별전형의 원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 입학 거부와 가려뽑기, 서약서 강요 등과 같은 선발과정에서의 온갖 차별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업능력 하향화 해결 방안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전형이 오히려 장애인의 학업능력 하향화를 촉발함에 따라 장애인계의 처음 기대와는 달리 전반적인 장애인 고등지식인 육성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입시교육기관화 하고 있는 일선 특수학교의 기능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규과정에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이전의 통합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장애가 있더라도 제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일반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그 보완책으로 현행 수학능력시험을 장애인들이 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학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전형은 말 그대로 일반경쟁으로는 도저히 대학에 진학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차 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애학생들의 중등학교 이후의 고등교육 전달체계를 다양화하여 수학능력이 미치지 않는 학생들이 꼭 학문지향의 정규대학이 아니라도 자신의 개성과 적성에 맞추어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특수학교의 기능 정상화라든가 통합교육 정책의 강화, 수학능력시험의 과학화와 같은 단기적이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과 특별전형 대상의 제고, 고등교육전달체계의 다양화와 같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들을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체제의 개선

1) 장애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학생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즉,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발판으로 장애학생 지원체제의 필수 요건들을 해당 법령에 분명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국민으로서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에 대한 규정과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하는 이념적 틀, 장애를 이유로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은 이미 교육기본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과 장애인복지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8조)에 잘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학이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동과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 제7조)로 마련해 놓고 있다. 물론, 장애인 교육을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법률이 특수교육진흥법이기는 하나, 이 법의 한계는 주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기본 정신을 고등교육에도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 규정들을 직접 근거로 삼기엔 부적절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여러 법률상에 명시된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생들의 피부에 닿는 지원 요건들은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즉,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취할 노력이라든가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을 지원할 전담기구의 설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이해와 일관성을 도울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지침서 개발, 지원요청과 지원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각종 절차와 양식 등에 관한 실제적인 규정은 어느 곳에서도 강제하거나 다루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러한 체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강제화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장애학생 지원 전담 기구 설치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학교생활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임기응변적이거나 단속적인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보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이와 같은 중심 기능

을 할 수 있는 곳은 전담지원기구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 우수 대학들은 장애학생 전담 지원 기구를 상설화 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선정과 학업에 필요한 인력 및 보상기자재의 지원은 물론, 장애학생 복지와 생활, 진로와 관련된 인프라 및 네트워크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는 전적으로 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따라서 이 기구에 여타의 다른 업무를 부과하거나 겸하도록 하는 것을 옳지 않다. 그것은 장애학생들의 지원 업무가 대학에서 이루어는 학사 및 행정의 일부가 아닌 또 하나의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 대상에 따라서는 전혀 새로운 분야를 다루어야 할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하므로 새로운 발상이나 아이디어 창출도 겸하여야 하므로 업무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는 가능한 한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또한 독립적인 수행범주와 협력적인 수행범부로 구분하여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 지원전담기구를 조직함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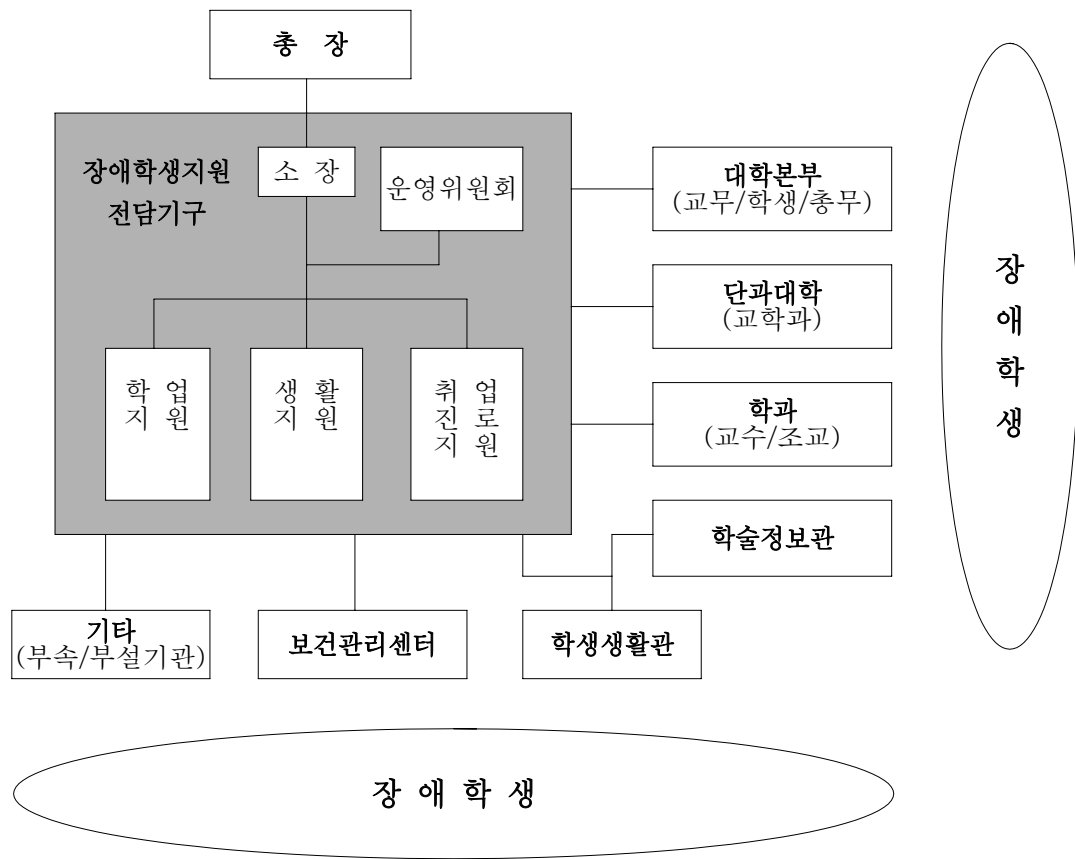
첫째,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 종사자들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독자적인 수행업무와 협력적인 수행업무를 동시에 관장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통합 및 조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는 그림 1에서 보듯이 대학 내 모든 부서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해 협력(통합 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에서는 교수-학습, 생활 복지, 취업 진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교수-학습 지원 분야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책임자로 하여 장애학생들의 학업 요구 파악, 학업 보조인력(수화, 대필, 녹음, 점역, 속기 등) 수급 및 지원, 학습보상기자재(노트북, 브레일 라이트, 확대기 등)와 대체자료 변환 기자재(점자프린터,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자막변환 수신기 등) 수급 및 지원, 학습장애학생 등의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주관한다. 또한 교무처와 장애학생이 있는 학과(교수 및 조교), 학술정보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학업 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조언과 지원에

대처해야 한다.



<그림 1>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 배치와 관계도

생활 복지 분야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재활복지를 전공한 전문가를 책임자로 하여, 학업 외적인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즉, 장애학생들의 숙식 문제 해결, 캠퍼스 내외의 이동과 접근 편의(교통수단), 여가 및 문화생활(공연관람, 주말여행 등) 지원, 학생회 활동 지원, 권익 옹호, 개인용무 처리, 의료, 보장구 수리, 대여 및 구입 알선, 개인 위생 지원, 개인후원 알선 및 관리, 자원봉사 수급 및 지원, 각종 생활 불편 접수 및 해결 등이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본부(특히, 학생처와 총무처), 학생생활관, 보건관리센터, 식당과 같은 학내 부처 및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과의 협력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취업 진로 지원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취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특수교육 전공자, 상담심리 전공자,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책임자로 하여 학생들과 정규, 비정규적인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취업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취업 정보를 수집 관리하며, 취업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인력배출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정보들을 해당학과에 제공함은 물론,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주요 관련 행정 기관, 사회복지관, 산업체 등과 정보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취업에 대비한 인성 및 적성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교내외 인력을 지원하여 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취업은 보호고용, 유보고용, 경쟁고용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찍부터 해당학과와 취업정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45명의 교수들로 구성하며, 대학의 장애인 관련 정책 개발, 연구과제의 제안 및 추진, 장애인 관련 학칙 제개정의 필요성 등을 협의한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에서는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생활에서 꼭 실천해야 할 지침서를 교수(주로 학업 중재 및 지원), 행정가(업무관련 지침), 학생들(통합을 위한 상호간의 에티켓)의 요구에 맞게 개발 보급해야 한다. 또한 이 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처에 알릴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개선책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3) 장애학생 지원 지침서 개발

장애학생 지원 지침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과 대학 구성원 간의 행동규범과 장애이해를 돕는 가이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대학은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침서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크게 교수용 지침과 학생용 지침, 그리고 장애이해 자료 등이 될 것이다.

교수용 지침에는 교수, 강사, 조교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자료다. 여기에는 학교의 장애학생 지원 이념과 목표, 장애학생 지원 관련 근거, 장애학생 학업지원 관련 협의, 장애학생 지원 전략, 장애 영역별 보장구 및 학습보상기자재, 유용한 문헌 정보와 인터넷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학생용 지침에는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준수사항, 내용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즉,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이념과 목표, 장애학생 지원 관련 근거, 학생의 권리와 책임, 대학 내 이동편의시설 및

접근편의시설 위치, 주요 시설의 장애학생 지원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취업 및 진로 상담, 유용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장애이해 자료에는 비 장애학생과 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함께 활동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소책자, CD, 비디오, 리플렛이나 팜플렛 등 여러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내용 또한 장애인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학생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로 다루어질 수 있다.

4) 장애학생 지원 문서와 지원 절차의 체계화

대학은 일관성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각종 문서와 학생들의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원의 고른 분배를 통해 유무형의 자원 낭비를 막고, 지원의 질 관리와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원 요구 경향이나 지원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장애학생을 지원하기에 앞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문서로는 ‘장애학생 신상 기록 카드’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학생의 일반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신학교, 경제적 수준 등)와 개인의 장애정보(장애명, 장애발생시기, 원인, 경과, 의료적 유의점, 약물복용 여부, 학업 상 곤란, 특별한 주의 등)가 포함되므로 본인의 허락이 없이는 관계자 외에는 절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일반정보는 대학 입학이 결정된 후 교무처와 학과의 협조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개인별 장애정보는 학생과 부모, 전임 교사 등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장애학생 신상기록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정보는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셋째,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추가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서는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에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지원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만 실명으로 열람할 수 있고, 그 밖의 대학 통계나 사례로 제시될 때는 반드시 담당자의 허락 하에 필요한 부분의 정보에 한해서만 익명으

로 전달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지원 절차는 지원 내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표 4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단계별 장애학생 지원 절차

단 계	절 차	비 고
지 원 전 준 비	지원 요구 수집	- 연 1회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 및 결과 분석
	지원 내용 결정	- 기존의 지원 내용 개선 - 새로운 지원 내용을 추가
	지원 내용 홍보	- 학과 또는 개인별 변경 내용 홍보
지 원	지원 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지원이 되지 않거나 유보되는 경우 즉시 사유를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여 차선택의 지원
	지원	- 수화통역, 대필 등의 보조인력 - 학습보상기자재나 보장구의 대여 - 기타 학업 외 필요한 지원
	지원 종료와 의견제출	- 지원 만족도 -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지 원 후 조 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	- 연 2회 이상 학생들의 만족도 및 의견 결과에 대한 협의
	지원 내용 개선	- 협의결과에 반영

장애학생의 지원 신청은 주로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기구가 전담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편리할 것이다. 따라서 지원신청은 지원 요구를 갖고 있는 장애학생이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에 직접, 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에서는 사전에 지원 내용과 범위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지원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주어야 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방안

1) 캠퍼스 이동 및 접근 지원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이동과 접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동이란 특정 장소(건물이나

공간)와 장소 사이를 옮겨 다니는 것이고, 접근이란 특정한 장소나 공간의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 목적하는 위치까지 도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이동과 접근행위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거의 쉽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은 신체적 장애(impairments)로 인해 지형지물을 시각적으로 감지하거나 또는 보행하는데 제한(disabilities)이 있으므로, 턱이나 계단과 같은 장애물들로 인해 이동과 접근에 제약(handicap)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장애학생들은 같은 캠퍼스 내에 있으면서도 다른 학생들처럼 자신이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에 가입할 수 없다거나, 다음 강의에 상습적인 지각생 신분을 면치 못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지 못해 늘 혼자 매점에서 빵을 사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만 관심만 갖는다면 현재 이러한 학생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장애학생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외국의 대학들의 경우 어느 곳도 이동 및 접근 편의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캠퍼스의 이동과 접근은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해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1차 관문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해결 없이는 이동에 장애가 있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이동 및 접근 시설은 대학의 주 기능인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대부분 평지보다는 언덕이나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어 교내에 가파른 경사도로와 계단들이 많다. 또한 학교의 건물들도 대부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있기 이전에 지어진 것들로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고 그나마 출입구도 휠체어가 드나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1층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장애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학생들의 요구수준에 맞게 캠퍼스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려면 상당한 초기비용이 투입될 것이다. 현재도 캠퍼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나 진행 속도가 매우 늦다.

일단 편의시설은 한 번 투자하여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 한 동안 관리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막대한 초기 비용과 시급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적어도 5년 내에 장애학생들의 이동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별 추진계획을 제출케 하여 국가가 일정 비율의 예산을 지원

하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대학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우선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부터 연차적인 계획 하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치하였다’는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제대로 설치하였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설치를 하기 전에 먼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우선 당장 요구가 적거나 없다고 하여 어떤 편의시설의 설치를 차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학에 시각장애학생이 적으므로, 점자블록의 설치를 다음해로 미룬다든지, 점자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2) 교수-학습 지원

학과별 교수-학습 장면에서 교수와 장애학생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강의’와 ‘과제’,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강의를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료 접근 및 수집 방법이 단순하지 않으며, 단일한 평가수단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실험·실습’이나 ‘견학’도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앞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부분 함께 풀릴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의 기본자세와 준비, 강의, 과제수행, 시험 및 평가 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기본자세와 준비

장애학생들이 통합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비해야 한다.

- 장애학생들이 같은 강의실에서 독특한 학습지원을 받는 데 대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강의, 실험실습, 견학기회는 물론 과제부여, 시험 등 모든 학습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기회와 의무를 부여한다.
- 이질적 성격의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별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 장애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동, 접근, 학습자료 획득의 곤란과 같은 장애로 인해 부딪힐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 학생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문헌의 목록과 교육 자료들을 미리 제공한다.
- 강의를 계획할 때는 장애학생들의 학습편의를 고려한 음성, 점자, 컴퓨터 파일 자료 제작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학기 시작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강의와 실험실습 방법, 과제작성 및 제출 방법, 시험의 출제 방법 등을 일러줌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걱정을 덜어준다.
- 사전에 장애학생들과 효과적인 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의논한다.

나) 강의

실제 강의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은 강의 전달 수단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원 수단은 강의 계획과 함께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강의 후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영역별로 강의에서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장애영역별 교수-학습 지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 강의 중 강의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배려 - 강의 전에 저시력 학생들을 위한 확대자료나 맹 학생들을 위한 점자자료, 문서(반드시 text파일)로 작성된 플로피 디스켓을 강의자료(handout)로 제공. 강의자료에는 그림이나 도표를 최소화하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풀어서 제시 - 모든 강의 정리 노트와 읽기 자료를 학과 사이트나 이 메일을 통해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확대복사, 음성변환, 점자출력 등으로 다시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에 강의자료를 제공 - 교수의 입 모양을 읽어(讀話) 강의를 이해하는 청각장애학생이 있을 경우 언제나 그가 정한 자리를 유지하도록 배려하고, 교수는 항상 그 학생을 보며 정확하게 말하도록 유의. - 교수는 자신의 몸짓이나 표정도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에 유의 - 강의 중 쉬운 말을 쓰고, 단문 형태의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며, 복잡한 표현을 피함 - 강의 중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그 개념을 설명하고, 미리 강의자료에 제시 -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전공 관련 용어들을 선정하여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여 학과 사이트에 올리거나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강의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도록 함 - 교수는 강의 속도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자막지원을 하는 등 학생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을 강구 - 수화통역 지원을 받을 경우 강의자료를 해당 수화통역사에게 미리 제공함으로써, 강의의 흐름을 이해하게 함은 물론 기존의 수화에 쓰이지 않는 용어들에 대한 표현방법을 강구	- 풍부한 강의자료를 제공. - 필기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생들 가운데서 대필자를 지정해 주거나 강의 내용을 학과 사이트나 이메일(E-mail)로 제공 - 언어장애가 심한 학생에게는 개인적인 견해나 과정을 묻는 질문보다는 ‘예/아니오’ 정도의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을 주로 함 - 척추장애를 입었거나 특별히 체력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강의 중에도 출입을 허용하며, 좌석의 위치도 배려함 - 교수는 특히, 환절기나 시험, 교내행사 준비 기간 중에는 간질 질환이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유의

다) 과제수행

과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학업의 중요한 과정이며, 학력 평가의 주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장애학생들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할 때는 먼저 충분한 협의와 수행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장애학생의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 가지 주제의 과제를 제시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는 개인별 수행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즉, 제출내용, 제출기간, 제출형식, 제출방법 등을 개인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학생과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 과제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수행전략이나 자료의 종류, 수집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과제수행을 위해 기존의 각종 녹음 및 점역 강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내용을 문서파일로 보관하여 언제든지 검색하여 활용토록 하며, Dos 및 Windows 운영체제의 음성변환 사용과 웹 사이트의 음성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 및 점자 노트북(한소네 브레일 등), 점자 프린터를 비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지원한다.
- 근로학생을 활용하여 장애학생들의 인터넷 자료 검색, 도서관의 책이나 문헌 찾기, 자료복사, 도서대출 등을 지원한다.
- 필요한 경우 자료의 녹음, 점역, 수화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라) 시험 및 평가

시험은 학생들의 현행수준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은 시험에서도 강의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예방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보완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장애학생들은 여전히 시험에서 불리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의 성적 비중을 낮추고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평소 과제수행과 강의 참여도,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에 고른 비중을 둬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시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에 좀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 사이에 평가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쳐 개개 학생의 요구가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즉 장애학생들도 다른 학생과 동일한 교육적 기준이 적용 받는다고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마) 장애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 지원

장애학생들의 강의와 과제 수행, 평가 등에 따라 학업에 필요한 정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도서관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른 어떤 시설에 못지 않은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학생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 도서관 입구는 계단이 아닌 경사로나 평지가 되도록 하며, 도서관 출입문은 회전문이 아닌 자동문이나 여닫이문으로 한다. 도서관 직원이 항상 대기하여 장애학생의 도서관 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고, 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각 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마련하여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야 함은 물론이다.

도서관의 배치에 있어서는 모든 도서들이 눈높이 이상으로 높게 진열되지 않도록 한다. 도서들이 진열되어 있는 통로는 휠체어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넓어야 하고 도서 진열장에 도서 목록은 점자번호판과 확대번호판으로 함께 표시한다. 각 진열장 코너마다 신호기를 달아 장애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신호기를 누르면 도서관 직원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내 자료센터(컴퓨터교수공학지원)를 두어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을 상담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매체들과 기자재들을 마련하여 학습 및 자료실로 겸하여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생활 및 복지 지원

대학생활의 편의 보장은 학업 외 서비스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아직 이동 및 접근권 확보 수준도 미약한 형편으로 장애학생 개인의 생활 편의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한국재활복지대학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내 이용불편 시설 모니터를 통한 관련부서 건의 및 해결, 보장구 대여 및 수리, 여가 활용을 위한 나들이 및 쇼핑 지원, 자원봉사자 연결을 통한 목욕, 이미용, 기숙사 청소 등 개인위생관리 지원, 컴퓨터 기능 학습 지원, 기초학력증진 강좌 운영, 휠체어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등하교 시간 철도청 경부선 열차의 장애인전용객차 집중 배치 협조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편의 제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에서 기숙사를 신축할 때는 1층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은 반드시 장애학생들을 위해 배치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를 갖춘다. 특히, 중증의 지체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3-4명의 근로학생이나 자원봉사자를 알선하여 세면, 용변, 청소, 식사, 등하교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매주 가족이나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목욕과 나들이 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뇌성마비, 척추손상,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지체장애학생들은 신체적인 활동이 왕성하지 못하므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에 놓임으로써 쉽게 근육의 구축과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체력이 약하여 비장애 학생들보다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시험기간의 과도한 긴장이나, 무더위, 환절기 등에 간질이나 탈진, 감기 등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이 평소 일정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물리치료사가 있는 체력강화실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보건관리센터에서는 시험기간이나 환절기를 대비한 장애학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학생들은 바퀴가 펑크 나거나 사용 중인 전동휠체어가 고장을 일으킬 경우 전혀 이동할 수 없으므로 즉각적인 수리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학 내에 장애학생들의 보장구를 수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다른 보장구로 대여할 수도 있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은 그만큼 활동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정기적으로 동료학생들과 함께 영화나 연극, 음악회, 전시회 관람과 같은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목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뇌성마비 장애학생들과 같이 운동중추의 마비로 움직이기 힘든 경우나 시각장애로 볼 수 없는 학생들의 개인위생이나 주변정리정돈, 개인적 용무를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나 근로 학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학생들이 학업, 교우, 의료, 보장구, 생활, 경제 등 학교생활과 개인의 신변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있어야 한다.

4) 취업 및 진로 지원

졸업을 앞둔 장애학생들은 자신들의 취업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대학은 이

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비 장애학생들조차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학생들의 취업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겠느냐는 무언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비 장애학생들에게는 취업설명회다, 취업 전 교육이다 하여 취업정보과를 두어 활발한 지원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장애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취업 현장에서 웬만해서는 장애인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취업 의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장애 인력을 수용하는 개인사업체나 기업의 취업 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정보 등을 다각도로 수집하고, 그에 대한 구직 준비요령을 알려줌으로써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생처(취업정보과)와 협력하여 필요한 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지원을 위해 대학에서는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전국의 직업안정 기관,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취업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리 취업 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사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와 학생처(취업정보)의 협력으로 평소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체를 찾아내어 관심 있는 장애학생들을 견학시키거나 학과의 실습현장화 하고, 사업체의 책임자를 초청하여 정기적인 취업 설명회나 강연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취업 현장을 관리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취업 안정을 도모한다.

셋째, 취업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취업 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장애인을 수용하려는 사업체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6개월 혹은 1년 과정의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취업 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 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취업과 연결되도록 한다.

넷째, 학생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모색한다. 장애인의 고용 조건은 경쟁고용과 유보고용, 보호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과의 지속적인 상담, 학과의 의견, 보호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한다.

라. 국가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방안

1) 장애인고등교육 관장 부서 설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곳은 ‘인적자원관리국’이다. 이곳에는 고등교육정책과와 학사지원과, 사학지원과, 지역인적자원개발팀의 4개 부서가 있다. 대학지원국은 4년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 학술, 학사, 재정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가운데 장애학생 지원과 직접 관련된 업무가 12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 까닭은 대학지원국 내에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정책적 이해를 갖거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학사지원과에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등 2명이 있으나, 독자적인 판단과 정책을 입안할 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결국 관련 업무는 많으나 장애인과 직접 관련지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폭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심의관’ 내에 있는 ‘특수교육보건과’의 업무 중 특수교육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관리실’ 내에 “특수교육정책담당관”으로 신설함으로써 현재의 유·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까지 장애학생의 모든 교육을 관장토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의 장애인 교육을 관장하는 행정조직이 전무한 상황에서 특수교육보건과는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사실상의 특수교육 업무를 총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부서의 한계는 유·초·중등 교육까지로 공식적인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대학교육 정책을 입안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유·초·중등교육의 범주 안에서도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일부인 특수학급만을 주로 관장할 수 있을 뿐이어서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통합교육의 정책적 확산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대학의 장애인 교육의 정상화와 통합교육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특수교육보건과를 보건업무와 분리하여 기획관리실 내 “특수교육정책담당관”으로 신설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체계 개발 및 보급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장애학생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직

(인적 자원)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일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체계 개발 및 보급이라 할 것이다. 대학이 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지원체계가 무엇인지 그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지원체계의 모형 개발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를 때까지는 국가가 지원할 것을 전제로 소요예산 규모도 함께 추산해 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지원체계의 요건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3) 기본 지원 설비 확충 계획 및 예산 지원

지원체계의 모형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립대학부터 적용하여 시범 운영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체계의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대학을 두어 사전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에 시범 운영할 때는 사립대학이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하며, 국가는 적정 비용을 산출하고 아울러 지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점차 주변 대학으로 지원할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수년 내에 지역별 지원체계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예산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단계적 예산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가장 장애학생 지원이 앞선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체계 모형 수준에 이르도록 우선 지원한다.

둘째, 주변 대학은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 가운데서 우선 선정한다.

셋째, 장애인의 대학입학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지원 대학의 수를 결정한다.

넷째, 예산 지원은 5년 내에 완료한다.

4)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평가 및 후속 조치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체계가 갖추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지원의 지속성과 일관성 및 발전 정도를 평가할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실제 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대학의 종합평가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둘째, 시민단체를 위촉하여 평가 대상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 만족도를 조사한다.

셋째, 우수 대학을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사례를 널리 보급하며, 부진한 대학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함께 강구한다.

4.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높은 단계의 자기결정력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를 모았던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정작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환경은 물리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사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여 대학의 문턱을 낮춘 정부가 정작 대학생활에 따르는 후속 지원 조치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방안도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데서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장애인 중심의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설립하고(2002),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2003)를 수행하여 전국의 대학을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 대책’(2004)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등 장애인의 고등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교수-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 원만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및 취업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엔 필연적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고비를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본다.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 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모두가 특단의 조치와 결정을 해 주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숙 등(2002).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 방안 연구.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강병근(2002).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특수교육 관리자 과정, 2002 직무연수 제1.2.3기 자료집, pp69~105.
- 교육부(199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200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200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권병현(1999). 청각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남순(2001). 장애 학생의 특례입학과 대학시설 환경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 연구, 제36권 제1호, pp81~100.
- 김도수(1998,a). 장애인의 통합교육과 평생교육 체제. 현장특수교육 제5권 4호(통권 17호), pp8~19,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김도수(1998, b). 장애인의 통합교육과 평생교육 체제. 현장특수교육, pp8~19.
- 김동연 등(1998).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방안.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김동연 등(1999). 장애학생 고등교육의 방향. 현장특수교육 제6권 4호(통권 21호), pp8~51.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김동은(2000). 연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체계.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게르니카 장애학생지원센터.
- 김동훈(1999). 한국 대학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모색.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경(1999).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국(1989). 특수교육의 진흥방안.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장애자복지대책 공청회 자료, pp24~32.
- 김영미(1999).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 실태와 문제점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화 등(2000). 생산적 복지와 특수교육. 현장특수교육 제7권 4호(통권 25호), pp8~29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김윤현(2000).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애 등(2001).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모형연구(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학생지원). 서울:교육인적자원부.
- 김정열(1996).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영 등(2000). 특수학교의 재구조화 방안.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김지영(2000).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입시제도 분석.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천우(2000). 장애 대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수(2001). 무장애대학 만들기. 서울: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 박계순 등(2002). 대학입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현장특수교육 제7권 5호(통권 26호), pp34~44.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박옥금(1997). 시각 장애인 도서관 설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옥순(1994). 넓어지는 대학 문(교육부의 장애우 '대학 특례입학' 발표, 그 허와 실). 함께 걸음 3월호, pp64~65.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박찬웅 등(2002).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한국특수교육학 2002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321~340.
- 사다토오 다케히로(2002). 대학교육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학생 고등교육관련 자료 pp61~79.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서경자(2000). 대학캠퍼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계명대학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산업기술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순임(1993).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의 새로운 모형구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진호(2001). 장애인 교육과 고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설 훈(2002).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 부실. 국회 질의 보도자료.
- 송실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박지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원연대(2001). 박지주 씨 소송의 의미와 장애인 대학생의 권리찾기를 위한 간담회 자료집. 송실대 총학생회.
- 양재신(2000).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 장애 대학생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pp41~44.
-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게르니카(2001).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을 꿈꾸자. LG

- Global Challenger 2001 탐방 보고서.
- 오경자 등(1998). 장애 대학생 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 오영희(1999). 한국 대학 입시제도의 변천과정과 원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규성 등(1994). ‘특례’보다는 ‘경쟁’ 위한 환경조성이 더 시급해. 함께걸음 9 월호, pp 23~30.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용근(2002). 한국 성인 정신지체 및 중증.중복장애인 개별화 가족지원프로그램 구성 요소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특수교육 요구 아동 연구 제10집. pp101~133.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이정기 등(2002). 발달장애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 및 사회적응 실태 추적 조사 연구. 발달 장애학회지 제6권 2호 pp213~228
- 임안수 등(2000). 설계자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서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0). 장애우 왜 인권인가. 사회복지법인 사랑과 사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a) ‘장애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b). 장애학생 고등교육권 관련자료.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2001).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간담회 자료집.
- 장애인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2002). 무장애대학교 만들기 간담회 자료집.
- 재활복지연구소(2002). 장애인이 있는 참 아름다운 세상. 한국재활복지대학 2002 장애 이해자료. 평택:한국재활복지대학.
- 정동영 등(1998). 장애인 교육. 복지실태 국제비교.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정동영 등(2000). 특수교육 비전 2020.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정동영 등(2001).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정영석(2000). 장애대학생의 갈등과 정체성 형성(연세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간행. 학부졸업논문.
- 조한진(1997). 장애인 대학과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교윤(1998). 특별 입학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실질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 철(1997).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과 교육관으로서의 대응.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0). 장애인 인권 지침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995). 주요국의 장애인 복지기본법.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편역(1992). 국제장애정책선언집.
 다산로펌 <http://www.lawdasan.co.kr>
 대구장애인 종합복지관 <http://www.dgrc.or.kr>
 사회복지정보원 http://welfare.or.kr/library/virtual_center/34.htm
 서울여성노조 가상법정 <http://www.womencourt.or.kr/womencourt>
 서울특별시 장애인 종합 홈페이지 <http://metro.seoul.kr>
 수원대학교 웹매거진 <http://www.wowzine.net/wowzine/2002/12-14.htm>
 신라대학교 교직원 홈페이지 <http://lotus.silla.ac.kr>
 장애인전문 포털사이트 <http://www.abledata.co.kr> /declaration/content
 장애인정보통신망 <http://www.korre.net/korrehome.htm>
 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터넷방송
<http://www.voc.or.kr/main/show.asp?no=1114&page=12>
 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터넷방송
<http://www.voc.or.kr/main/show.asp?no=1085&page=14>
 제주대학교 뉴스 <http://www.cheju.ac.kr> /cnunews/625호/아라2000.html
 제주대학교 뉴스 <http://www.cheju.ac.kr> /cnunews/628호/기고.html
 제주대학교 뉴스 <http://www.cheju.ac.kr> /cnunews/628호/기획1.html
 제주대학교 뉴스 <http://www.cheju.ac.kr> /cnunews/624호/인터뷰4.html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http://jinfo.freeget.net/board/jinfo_view.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http://jinfo.freeget.net>
 한국직업재활정보센터 <http://www.kvric.com>
 국민일보 (2002,7,26) 장애인 편의시설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힘겨운 캠퍼스'
 장애인 복지신문(2002,1,4) 특례입학 대학 편의시설은 뒷전
 Office for Disability Servic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http://www.lions.psu.edu/ODS/>
 Disability Service, University of Sydney; <http://www.usyd.edu.au/su/disability/welcome.html>
 Disability Resource Centre, University of Cambridge; <http://www.came.au.uk/cambuniv/disability>
 츠쿠바대학 홈페이지 <http://tsukuba.ca.jp>
 츠쿠바단기기술대학 홈페이지 <http://tsukuba-tech.ac.jp/college.htm>

Education and skills: <http://www.dfes.gov.uk/consu> ..

The Special Education Needs and Disability Act;
<http://www.techdis.ac.uk/resources/skill01.html>

The Revised Code of Practice. November 2002:
<http://www.bda-dyslexi.org.uk>

Overview of standards in special schools:
<http://www.archive.official-documents.co.uk/document/ofsted/spe>

Special Education in England; <http://edreform.com/pubs/beales2.htm>

Programme specifications Introduction; <http://www.qaa.ac.uk/crntwork/progspec>

Disability and web site provision;
[http://bunnyfoot.com/freestuff/articles/accessibility /legal.html](http://bunnyfoot.com/freestuff/articles/accessibility/legal.html)

Some Special Projects of WWD: <http://wwd.amps.org/projects.html>

SEN Code of Practice on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Pupil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 SEN Thresholds-good Practice Guidance on Identification and Provision for Pupil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http://www.dfes.gov.uk/publications/guidanceonthelaw.dfeepub/ju100>

Accessibility of Higher Education Websites; <http://www.bunnyfoot.com>

Education law; http://www.nutter.com/practice_education.cfm

Advancing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www.hrdc-drhc.gc.ca>

In Union: A Canadian Approach to Disability issues; <http://socialunion.gc.ca/pwd>

Social education in canada; <http://www.ccsd.ca/perception/252/specialed.htm>

University Policies, Procedures & Regulations Database; [http://www.yorku.ca /secretariat/legislation/senate/spcneeds.htm](http://www.yorku.ca/secretariat/legislation/senate/spcneeds.htm)

장애인 평생교육:장애성인 교육의 현황·과제 및 대책

정 동 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성인 교육의 현황·과제 및 대책

정 동 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평생교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개념인가? 평생교육법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 법은 평생교육을 교육기본법과 종전 사회교육법의 사회교육과 동일하게 정규 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 외의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정의는 학교라는 장소와 울타리를 기반으로 하여 그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이라 규정하는 협의의 평생교육 개념에 해당한다. 반면 광의의 평생교육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개인과 집단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사회적·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키는 과정으로 생의 각 단계 및 영역에서 가능한 최고도의 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학습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Dave, 1976). 학계나 일반인은 보편적으로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협의의 평생교육 개념보다 원론적 정의인 광의의 정의에 기초하여 태교부터 유아교육·아동교육·청년교육·성인전기교육·성인후기교육·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사회교육·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는 교육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김중서 외, 1993). 본고는 이런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에 따라 성인교육을 수직적 축에서는 고등교육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정하며, 장소의 축에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함하여 각각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의도적·조직적인 모든 교육활동이라 정의한다.¹⁾ 따라서 본고는 먼저 장애성인 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을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성인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후,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1) 이런 구분이 영유아 장애아동, 학령기 장애아동,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주제를 구분한 본 토론회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I. 장애성인 교육의 목표·내용 및 방법

1. 장애성인 교육목표

장애성인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인가? 성인교육은 현실적으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그에 따른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²⁾ 그렇다면 이런 강조점을 반영한 목표를 장애성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 또 아니면, 이 두 개의 목표를 결합시켜야 하는가? 등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³⁾ 이 물음은 성인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라는 목적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라 할 수 있으나, 그 의미를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중간 목표보다 삶의 질 제고라는 최종 목표에 두고 직접적으로 이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적자원 개발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술·지식·정보·태도·가치관·도덕성 등 인간의 총체적인 잠재능력이나 성품 등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개발이라는 의미 속에는 인적자원을 형성하는 좁은 의미보다 인적자원을 형성·배분·활용·유지·관리하는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강무섭, 2001). 결국 인적자원 개발도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목표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은 개인의 기술·지식·정보역량의 개발과 인적자원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은 현재 강조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보다 개인의 태도·가치관·도덕성 등의 개발과 인적자원을 활용·유지·관리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을 받는 장애성인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Speight 등(1991)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틀로 개인적 가치와 욕구, 인간 공통의 가치와 욕구 및 특정 문화적 가치와 욕구를 구성내용으로 하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적인 가치와 욕구란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와 요구를 지닌다’는

2) 물론 이런 요구 이전에도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언급되어 왔지만, 최근 더욱 더 성인교육의 목적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3) 이상오(2001)도 동일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교육인간학적 관점에서 장애성인 교육을 장애성인의 특성에 따라 교육의 소프트웨어 즉, 교육의 목표·내용·방법을 일반성인 교육과 차별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미로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개인적 욕구를 지닌다는 것이며, 인간 공통의 가치와 욕구란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과 같은 가치와 욕구를 지닌다’는 의미로 장애인은 독특한 가치와 욕구 외에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욕구나 가치와 동일한 욕구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문화적 가치와 욕구는 ‘사람은 모두 일부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가치와 욕구를 지닌다’는 의미로 장애인은 소속 집단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경험·언어·전통·종교 등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의 목표는 일반성인과 동일한 차원으로만 논의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장애에 의한 특별한 욕구의 충족을 추가하는 것으로만 논의해서도 안 되며, 위의 세 가지 가치와 욕구를 모두 고려하여 논의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주장의 전제는 단순히 이 시대가 인적자원 개발을 요구하는 시대이고 평생교육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장애성인도 교육을 통해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개발해야만 한다는 논리도 아니며, 그렇다고 장애성인 교육이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이 시대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해야 한다는 논리도 아니다. 장애성인 교육은 그 동안 주류집단이 아닌 소외집단·정상집단이 아닌 결함집단·일반집단이 아닌 특수집단으로 인식받고 대우받아 온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목표 외에 그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2. 장애성인 교육내용

장애성인 교육이 그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이라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성인과 공통된 가치와 욕구·장애성인들의 특정 가치와 욕구 및 장애성인 개개인의 가치와 욕구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도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성인교육의 내용은 정보문해의 성취를 위한 정보문해교육·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교육·시민의식 고취와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교육 등이다(조홍식, 2001).

정보문해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찾고 평가·활용·창출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 및 태도를 말한다(이희수 외, 2000).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우편·전자상거

래·원격근무·가상학교 등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보문해를 달성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생활의 전반에 걸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보문해를 성취하지 못하여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정보비문해계층이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인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며, 성인교육은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보문해교육을 하나의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인적 자원 개발교육은 평생고용의 파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요구되는 내용이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려는 고용관행의 확대에 따라 현재 평생고용이라는 전통적인 관행이 후퇴하고 있다. 이는 계속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개인을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배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전락시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인교육은 고용가능성의 신장을 주요 과제로 하며, 이를 위해 수요가 있는 직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능력을 습득하고, 이런 능력의 신장을 위해 학습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기술의 연마나 활용 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조홍식, 2001). 이를 위해 성인교육에 정부·고용주 및 근로자 등 직업훈련 관련 집단간 협력체제의 강화, 훈련재정의 공동부담, 국가 수준의 직업능력 평가·인증체제 확립, 비공식적 학습의 평가·인정체제 도입, 훈련체제의 분권화 및 유사시장(quasi-market) 원리의 도입 등이 시도되고 있다(김영화, 1999).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을 고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찍부터 민주주의를 확립한 서구는 공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에 광범위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한 동시에 성인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의 시민교육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함으로써 성인들이 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적인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성낙돈, 2000). 인권존중 의식과 행동의 일상화·토론문화와 협상문화의 정착·공중도덕과 시민질서의 회복·건전한 소비의식과 행태의 정착·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은 한정적인 기간동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일관된 학습경험을 요구한다(조홍식, 2001). 또한 고도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의 삶이 점차 파편화 되면서 사회적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약해져 많은 집단이 주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타인을 만나고 신뢰와 새로운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할 수 있는 성인교육을 요구한다.

장애성인 교육은 정보문해교육·인적자원 개발교육·시민교육 등과 같은 일반성인

교육의 내용 외에 장애성인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가치와 욕구의 충족을 위한 내용의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 장애성인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장애의 경감·극복 내지 보완에 필요한 특별한 교육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여가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요구하며, 고용·주거·재정 및 여가활동에 대한 교육을 요구한다(Ashman & Elkins, 1995).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성인은 미문해의 경우 문해교육을 요구하며,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위험에 대한 보호교육을 요구하고, 자기결정과 자기주장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요구한다(정동영·정동일·정인숙, 2004).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은 일반성인 교육이 대상으로 하는 정보문해교육·인적자원개발교육·시민교육 등과 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 외에 문해교육,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 및 자기결정과 자기주장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3. 장애성인 교육시설

평생교육법은 제2조에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성인교육시설을 성인교육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평생교육시설은 운영주체와 성격에 따라 국가주도형·학교주도형·민간단체주도형·종교 및 문화기관주도형·기업주도형으로 구분하고,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직업기술과 전문교육·건강과 보건교육·가족생활교육·지역사회 교육·여가교육·국제이해교육·국민독서교육·전통문화이해교육 시설 등으로 구분하며, 설립 목적과 기능에 따라 사회교육 전담기관·일반교육기관(정규학교)·준교육기관·기타교육기관(비교육기관)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대상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육·농민교육·여성교육·노인교육·근로자 교육·청소년교육 시설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이런 분류준거 2~3개를 혼합하여 공무원 연수원 및 공공 교육훈련기관·직업훈련기관(공공·사업내·인정직업훈련원 등)·산업교육연수기관(산업체·금융계연수원 등)·학원과 일반평생교육기관·학교중심(부설)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원·지역사회 학교 등)·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각종학교·기술학교·방송통신대)·청소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수련시설·자연학습원·학생교육원 등), 여성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여성회관·부녀복지관 등)·노인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노인회·노인대학·경로당 등)·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단체(여성·노인·보육시설·복지관 등)·상담기관, 학술 및 연구기관(연구소 및 학회)·시민사회단체 등을 모두 평생교육시설로 분류하고 있다(이희수 외, 2000). 이런 평생교육시설의 분류방식은 장애인의 경우 분류 준거의 추가를 요구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분류는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inclusion)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준거를 추가해야 한다. 최근 장애인 교육의 최대 쟁점은 정상화(normalization)이다. 정상화는 가능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행동과 특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정상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활동이다(Wolfensberger, 1972). 정상화 철학의 도입 이후 교육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라는 이중체제보다 단일체제로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교육시설과 장애인과 일반인 둘 다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시설로 분류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의 분류준거에 나타난 시설들을 보면,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학교는 물론,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학원,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 고용지원시설 등이 모두 장애성인 교육시설에 포함되며,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고용지원시설 등도 모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포함된다.⁴⁾ 따라서 장애성인 교육시설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만이 아니라, 학원, 수련시설, 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모두 장애성인 교육시설에 해당하며,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학원, 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등도 모두 장애인 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장애성인 교육방법

성인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성인교육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성인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나, 그것을 제공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성인교육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경우 적절한 성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평생교육법은 제4장에 평생교육시설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근대 이후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의무교육화 되었고, 이런 교육의 보편화와 의무화는 그 이전에 교육의 배제 대상이 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더욱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되어 왔다. 이것이 사회정의이고, 이런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가 바로 민주사회이다. 장애성인 교육이 사회정의와 민주사회라는 이상의 실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라면, 이는 시설중심 패러다임이나 서비스중심 패러다임이 아니라, 지원중심 패러다임이나 역량강화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⁵⁾

시설중심 패러다임은 1900년대 중반의 특수교육 패러다임으로 특수학교 등과 같이 분리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에게 차별적인 처치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이고, 서비스중심 패러다임은 특수학급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해 사회통합을 준비하도록 한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지원중심 패러다임은, 개인은 성공적인 학습·작업경험·적응을 위해 통합환경에 위치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에서 장애학생은 통합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지원교육), 장애성인은 직무지도원(job coach)의 지원을 받으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며(지원고용), 장애성인은 자신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 주택에서 생활해야 한다(지원생활). 이는 분명 장애성인이 자연적인 환경에서 그들의 욕구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역량강화 패러다임은 장애학생도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선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치로운 존재이며, 자신도 집단에 소속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도록 지원하는 패러다임이다.

장애는 인간 경험의 자연적인 부분이며,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자기결정을 즐기며 선택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으로 주류집단에 통합될 권리를 지닌다는 사실은 미국의 ‘발달장애지원및권리법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the Bill of Rights Act, 1999)’이 아니더라도 누구나·언제나·어디서나 인정해야 한다. 생태계도 동질(同質)이 아니라 이질(異質)이어야 균형을 이루고, 동종(同種)이 아니라 다종(多種)이어야 완전한 바와 같이 장애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며, 장애인이 없는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 장애인이 있는 사회가 정상이며 건강한 사회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장애인의 역량강화는 자기결정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장애성인은 그동안 다양한 물리적·태도적 장애물로

5) Polloway 등(1996)은 20세기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치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설중심(facility-based), 서비스중심(serviced-based), 지원중심(supports-based), 역량강화(empowerment)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해 선택을 결정할 기회나 참여할 기회를 계속 제한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장애성인은 자기결정과 관련된 능력과 태도의 발달에 필요한 기회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해 자신의 역량강화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은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일반성인이 참여하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선택결과와 참여를 보장하는 역량 강화패러다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장애성인 교육의 현황과 과제

1. 장애성인 교육체제

장애성인 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문해교육이나 인적자원개발교육만이 아니라 시민교육과 역량강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학교만이 아니라 학원, 복지시설, 재활 시설 등에서도 이루어진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인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정식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되나, 등록·인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장애성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인데, 이를 배제하고 장애성인 교육체제를 논의할 수는 없다. 현재 장애성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관장하고 지원하는 중앙행정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이다. 이 부처들이 장애성인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조).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을 위해 학교정책실의 교육복지심의관 아래 특수교육보건과를 두고 있고, 평생교육을 위해 인적자원개발국에 평생학습정책과를 두고 있다. 특수교육보건과는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각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지도, 특수교육기관의 시설·설비 확충 지원,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립특수교육원의 운영지원을 담당하고(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조 제12항), 평생학습정책과는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지원,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 지원, 원격대학의 설치 및 운영지원,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 지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관련 국제교류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 중 장애인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특수교육보건과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 및 평생학습정책과의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지원,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 지원, 원격대학의 설치 및 운영지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업무의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을 두고, 평생교육체육과를 두고 있으며, 시·군·구교육청의 학무국 초등교육과에 특수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를 두고, 학무국의 평생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를 두고 있다.⁶⁾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실의 장애인복지심의관 아래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를 두고 있다. 장애인제도과는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에 관한 조사·연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을 담당하고(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조 제13항), 재활지원과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체육·재활정보 및 결연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조 제14항). 보건복지부의 업무 중 장애성인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장애인제도과의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업무와 재활지원과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장애인의 체육·재활정보 업무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업무의 추진을 위해 시·도청의 보건복지여성국에 노인장애인복지과 등을 두고 있으며, 시·군·구청에 복지과 등을 두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6) 군교육청의 경우 교육과에 초등교육담당과 평생교육체육담당을 두고 있다.

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평등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조). 노동부는 장애인을 위해 고용평등법에 장애인고용과를 두고 있다. 장애인고용과는 장애인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장애인고용관계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직업재활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고 있다(노동부와그소속직제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노동부의 업무 중 장애성인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장애인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이다. 노동부는 이런 업무의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두고 있다.⁷⁾

이와 같이 장애성인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제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중앙행정부처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르면 시설별로 더욱 분산되어 있다. 장애성인이 언제·어디서·어떤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장애성인이 받는 교육이 교육인지, 복지인지, 고용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이런 체제는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체계이다. 행정은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급자의 입장만을 존중하는 행정은 구시대의 전유물이다.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은 중앙행정부처부터 각 부처의 장애성인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조정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전달체제를 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장애성인 교육시설

장애성인 교육시설이 정규학교만이 아님을 이미 언급했다. 학교 외에 학원, 복지시설, 재활시설 등도 모두 장애성인 교육시설이 된다. 그러나 성인교육, 특히 장애성인 교육을 논의할 때는 학교만이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란 인식이 강하다. 이런 인식의 탈피를 위해 각각의 시설들이 장애성인 교육기관이며, 평생교육법이 정한 평생교육 시설로 인가·등록·신고될 수 있는 시설임을 입증하면 다음과 같다.

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전체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애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차이점이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단사업의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로 이루어지는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부서와 기관에서만 산재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를 담당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학교는 분명 교육시설이다. 그러나 학교는 대부분 학령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성인교육시설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경우 당해 과정의 졸업자(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학령기 이후의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56조).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학교의 경우 이료재활과정을 통해 학교 졸업 이후 중도 실명한 성인에 대해 성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운영을 통해 전공과과정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성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분명 특수학교들이 학령기의 장애학생만이 아니라 장애성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임을 증명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 제2항의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않은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과 인적자원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⁸⁾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장애성인 교육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해 제공하는 교육이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⁹⁾

정규 학교 외에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재활시설도 장애성인 교육시설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의료·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분명 법의 규정과 같이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교육을 제공하는 장애성

8) 이 규정에 따르면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의 장애성인이나 초등학교 과정만을 졸업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야학은 특수교육기관의 파견학급으로 인가를 받아 검정고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정규 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야학이 특수교육기관의 파견학급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무학의 장애성인이나 초등학교 과정만을 졸업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야학은 특수교육기관의 파견학급으로 인가를 받아 학생에게 공교육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그 외의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은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인가·신고하여 학생에 대해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9) 호주의 LATCH-ON 프로그램, 일본의 개방대학 등은 모두 이런 형태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으로 권장되어야 할 형태이다(정동영·정동일·정인숙, 2001 참조).

인 교육시설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장애인직업전문학교도 장애성인에 대해 직업생활상담 및 진로교육 등의 인적자원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방사무소도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과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장애성인에 대해 인적자원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성인 교육시설은 다양하고 광범위 하나, 대부분 학교만을 장애성인 교육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런 인식은 장애성인 교육시설이 교육시설의 성격을 명확히 구비하지 않고 복지와 재활을 동시에 지원하는 운영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고, 장애인재활시설과 고용지원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이 인적자원 개발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낸다면, 이런 인식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 또 하나 장애성인 교육시설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고용지원시설이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차별화되지 않고, 학령기의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장애인 교육은 어떤 특정 연령이나 생의 특정 단계에 집중되기보다 모든 연령·모든 생의 단계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교육은 학령기의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학교도 학령기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장애성인보다 학령기 장애학생을 더 많이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⁰⁾ 학령기교육을 담당 한 학교 외의 시설은 학령기 장애학생보다 학교 졸업 이후의 장애성인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은 장애성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을 중복 지원하고 있는 운영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10) 예를 들어, 2000년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실적에 나타난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S시의 S장애인복지관은 연간 이용자 3,288명 중에서 학령기에 해당하는 4~18세의 이용자들이 1,324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하고, C복지관은 연간 이용자 427명 중에서 학령기에 해당하는 4~18세의 이용자들이 383명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하며, A시의 A장애인복지관은 연간 이용자 3,424명 중에서 학령기에 해당하는 4~18세의 이용자들이 1,763명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고, S시의 G장애인복지관은 연간 이용자 3,303명 중에서 학령기에 해당하는 4~18세의 이용자들이 1,940명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하며, J도의 M장애인복지관은 연간 이용자 241명 중에서 학령기에 해당하는 4~18세의 이용자들이 127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3. 장애성인 교육내용

장애성인 교육은 문해교육·정보문해교육·인적자원개발교육·시민교육과 더불어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 및 자기결정과 자기주장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해교육은 과령학생이나 중도 실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야학이나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이며, 정보문해교육은 특수학교와 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 교육 등이고, 인적자원 개발교육은 학교와 더불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작업활동시설·장애인보호작업시설·장애인근로작업시설·장애인직업훈련시설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방사무소와 장애인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 개발 등의 교육이다. 그리고 시민교육은 대학 평생교육원의 장애성인 프로그램과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과 사회적응 등의 교육이고, 장애성인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은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치료·훈련 등의 교육이다(정동영·정동일·정인숙, 2003).

이와 같은 장애성인 교육의 내용은 교육 대상의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한다. 이는 장애성인 교육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현재 장애성인 교육의 내용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문제는 장애성인 교육시설의 차별화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현재 장애성인 교육시설은 대부분 생활적응교육, 치료교육, 직업재활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도 장애인복지시설도 장애인고용지원시설도 모두 이런 내용의 교육만을 중복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성인 교육의 내용은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장애성인 교육은 인적자원 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성인 교육은 ‘백화점’ 형태로 나열적이고, ‘도시락’ 형태로 단편적이다. 즉, 수요자의 요구보다 시설의 편의에 따라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다른 시설이 이미 제공에 성공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는 결국 장애성인 교육내용이 단편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장애성인 교육은 내용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장애성인 교육방법

장애성인 교육은 장애성인이 분리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연적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자기결정을 하며 자기주장을 하는 역량강화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성인 교육은 이런 역량강화 패러다임보다 시설중심 패러다임이나 서비스중심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성인 교육시설이나 장애성인 교육내용의 현황이나 모두 역량강화보다 교육·생활·고용 기회의 보장에 맞춰지고 있다. 흔히 장애인 교육은 일반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방식과 원리는 가능한 유사한 생활양식과 일상생활 조건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상화이다(Nirje, 1969). 정상화는 장애인이 가능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개인의 행동과 특성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Wolfensberger, 1972).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지배해 온 패러다임인 시설중심의 패러다임과 서비스 중심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존중하여 그에 적합한 처치를 제공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고립된 장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특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을 일반환경에서 분리해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지원중심·역량강화 패러다임 시대의 장애성인 교육은 일반성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역량강화의 시대에 시설중심과 서비스중심 패러다임으로 장애성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장애성인 교육이 질보다 양이라는 현실적 기회 제한 때문이다. 장애성인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이 시설중심 패러다임이나, 역량강화 패러다임이나를 논할 여지가 없었으며, 질의 문제를 제기할 계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장애성인 교육은 분명히 기회 확대라는 양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나, 동시에 역량강화라는 질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성인 교육은 분명히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대책

1. 장애성인 교육체제 확립

장애성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어디서라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성인 교육체제를 확립한다.

대책 1 : 장애성인 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 장애성인 교육 업무를 부과한다.

장애성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성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부처부터 지역사회 평생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유기적인 교육 지원체제나 전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일반성인 교육은 중앙에 중앙평생교육센터를 두고, 지방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에 평생교육학습관 등을 두고 있다. 중앙평생교육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시·도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등은 시·군·구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장애성인 교육도 이런 공식적인 교육 지원 및 전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장애성인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 확립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체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분명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총괄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처로 장애성인 교육도 관장해야 하는 부처이다. 그러나 장애성인 교육은 효과적·효율적인 지원과 전달을 위해 평생교육 담당조직보다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평생교육 담당조직에 장애성인 교육담당자를 배치하여 장애성인 교육의 지원과 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으나, 장애학생 교육의 담당조직을 두고 있는 이상 장애성인 교육도 이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평생교육 담당조직이 일반인 평생교육은 물론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성인 교육을 부가적인 업무로만 여기고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이 장애성인 교육을 담당하면, 이 조직은 학생교육과 성인교육을 모두 담당하여 장애인의 생애단계별로 교육을 지원하는 완전한 평생교육 조직이 되고,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도 당연히 이 조직을 따라 개편·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교육을 제대

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성인의 교육기회 확대는 물론, 생애단계별로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장애성인 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 장애성인 교육 지원업무를 부과하여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장애학생 교육과 연계하여 장애성인 교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책 2 : 장애성인 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 장애성인 교육 장학기능을 부과한다.

현재 장애성인 교육의 문제는 질적 문제보다 양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 말은 장애성인 교육의 문제는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장애성인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의 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은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양적 문제와 운영되고 있는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질적 문제 때문이다. 개인은 다양한 교육욕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 또한 차이가 많다. 특히 장애성인의 교육욕구와 능력의 차이는 개인간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내 차이도 크다. 이런 장애성인의 특성과 교육욕구는 교육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엄격한 질 관리를 요구한다. 장애성인 교육이 질 관리를 받지 못하면 교육의 특성을 상실하며, 이런 특성의 상실은 교육기회의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애성인 교육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장애성인의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나 재활시설과 고용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은 복지 담당자나 재활 담당자의 지원도 필요하나, 이 프로그램이 교육의 특성을 구비하고 있는 한 교육자들이 그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 다른 부처의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장학기능을 부여하여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대책 3 : 장애성인 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 장애성인 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장애성인 교육은 대상의 다양한 장애유형과 특별한 욕구로 인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학생 교육 지원부서나 조직은 중앙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를 막론하고 대부분 2~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행정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보건과는 전문직 4명이 장애학생 교육정책 결정과 시행을 담당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도 1~2명의 전문직만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경우 전문직 1명이 다른 업무와 겸무로 장애학생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조직에 장애성인 교육업무만을 부과하면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 현대 사회는 평생학습 사회이고, 정부도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교육의 중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이상,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런 인력 배치는 우선 지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 하면, 현재 장애성인 교육은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지역교육청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 조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 장애성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외에도 이들을 지도·감독·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부서나 조직에도 장애성인 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 장애성인 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성인 교육시설의 관리·감독·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성인 교육시설 확충

장애성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어디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성인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대책 1 : 장애성인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 일반성인 교육시설에 장애성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통합교육은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상호 적응의 기회를 제공한다. 유·초·중등학교에서부터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은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장애성인 교육도 이러한 이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능한 일반성인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장애성인을 통합하여 교육하거나, 장애성인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시설들이 마련하는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성인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보다 장애성인의 사회적응과 역량강화에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된다. 장애성인의 사회적응과 역량강화는 분리된 시설보다 일반성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반시설에서 이루어질 때 더 많은 효과와 성과를 도출한다. 장애성인은 장애성인만을 위한 분리시설보다 일반성인을 위한 일반교육시설에서 더욱 실제적인 문제로 학습을 수행하고, 더욱 실천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한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교육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상화이다. 따라서 장애성인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서는 일반성인 교육기관에 장애성인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이나 특별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을 통해 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와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대책 2 : 장애성인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 장애성인 교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과 방법을 개선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만이 아니라 교육시설도 된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는 장애성인의 교육목표와 동일하다.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이 복지라는 광범위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이나 생활지원 등은 대부분 행정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지원을 주로 담당한다. 즉, 장애인복지시설이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복지보다 재활에 치중하고 있다(정동영·정동일·정인숙, 2003).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와 재활부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복지는 만족할만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개념이고, 재활은 손상된 기능이나 지체된 능력을 회복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런 재활의 개념은 교육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장애성인 교육은 별도의 시설을 설립하기 이전에 장애성인의 재활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고용지원시설부터 교육시설로 활용해야 함

을 함의한다. 따라서 장애성인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성인 교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장애성인 교육기회의 확대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대책 3 : 장애성인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운영내용과 방법을 개선한다.

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장애학생만이 아니라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 2004년 현재 전국에는 141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나(교육인적자원부, 2004), 시각장애학교를 제외하고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특수학교는 분명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장애성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윤점룡, 1999; 김주영 외, 2000; 정동영 외, 2000). 그래야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가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분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애성인 교육도 분명히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학령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도 분리시켜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학교는 장애성인만이 아니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특수학교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여가생활·취미생활 및 인적자원개발과 정보문해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운영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장애성인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성인 교육내용 다양화

장애성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어디서라도 그들의 특별한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교육 내용을 적합화·다양화한다.

대책 1 : 장애성인 교육내용의 적합화와 다양화를 위해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성인 교육은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정보문해나 인적자원개발교육에 내용을 한정하여 교육내용이 제한적이다. 장애성인은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도 요구하고, 가정관리를 위한 교육도 요구하며, 고용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교육도 요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도 요구하며,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한 교육도 요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요구한다. 그리고 인지 장애성인의 경우에는 문해능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도 요구하며,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도 요구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도 요구한다(정동영, 2001). 장애성인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이 이렇게 다양함에도 현재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제한적인 이유는 장애성인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성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성과 욕구의 차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요구한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학령기의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의 적합화와 다양화를 위해서는 장애성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등을 기초로 다양한 종류·형태 및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책 2 : 장애성인 교육내용의 적합화와 다양화를 위해 장애성인 교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실태를 평가 개선한다.

장애성인 교육내용은 장애성인 교육시설만큼이나 다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성인 교육시설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성인 교육내용은 시설별로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다. 이는 대부분의 장애성인 교육시설이 서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장애성인 교육기회가 확대되지 않고, 지원내용이 다양화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런 현실의 타파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장애성인 교육시설 평가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장애성인 교육시설이 고유 기능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적절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평가결과 교육 프로그램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운영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설의 재구조화와 맞교환(big deal) 등을 도모해야 한다(정동영·정동일·정인숙, 2004). 이 시대는 분명 평생학습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미래 사회에도 이러한 요구는 더욱 더 확대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성인 교육시설이 현재와 같이 특정 연령과 특정 내용만을 중복 지원하면, 장애성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내용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이런 경향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내용의 적합화와 다양화를 위해 이제라도 장애성인 교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실태를 평가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성인 교육 지원 강화

장애성인 교육기회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책 1 : 장애성인 교육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성인 교육시설에 장애성인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한다.

장애는 원래 그 종류와 수준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복잡한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한 인력이 교육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효과와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 더욱이 장애가 중증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은 더해져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인력이 그들의 교육을 전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성인 교육은 마치 누구나 담당할 수 있는 교육인 양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애성인 교육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한 전문가의 지원과 그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함양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아직 장애성인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배치되지 않고 있다. 평생교육사들이 양성·배치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았지 장애성인의 교육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 장애성인의 특별한 교육욕구와 그들의 적응상태를 분석하여 교육욕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면 장애성인 교육의 질은 더 많이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정동영, 2001).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생애단계별로 적절한 교육·복지·고용 지원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파편적이 되고 있으며,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중복 투자가 만연하고 있다(정동영·정동일·정인숙, 2003). 만약 장애성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배치된다면, 이들은 훌륭한 사례관리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성인 교육은 유아기의 교육욕구부터 학령기, 성인기, 노인기까지로 연결되는 특성과 교육욕구를 파악해야 하고, 생애단계별로 복지와 재활욕구도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구비해야 하는 전문성은 성인장애인의 교육욕구와 재활·복지욕구만이 아니라 유아기나 학령기의 교육욕구와 재활·복지욕구 파악과 노인기의 교육욕구와 재활·복지욕구 파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지원의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성인 교육을 전담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대책 2 : 장애성인 교육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성인 교육시설 운영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성인은 그 누구보다 먼저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구성원이다. 그러나 현행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흡하다. 교육을 논의할 때는 아직도 학령기의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고, 성인교육을 논의할 때는 일반성인 교육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전히 장애성인 교육은 교육논의 구조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성인 교육은 평생학습의 시대에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야 하는 교육이다. 현재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공적인 재정지원은 학교를 통해 시각장애학교의 의료재활과정이나 전공과과정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일부 공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의 시설은 대부분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애성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공적인 재정 지원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애성인 교육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공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이고, 교육복지이다. 앞에서 언급한 장애성인 교육체제 확립, 장애성인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장애성인 교육시설의 확대 운영, 장애성인 교육 전담인력 양성·배치 등은 모두 공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과제에 대해서도 공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보다 더욱 더 공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장애성인의 교육경비이다. 현재 본인의 부담이나 후원단체의 원조로 해결하고 있는 장애성인의 교육경비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장애성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적인 재정 지원은 장애성인 교육시설의 투명한 경영, 인적·물적 자원의 공평한 배분, 중복 투자의 방지와 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장치나 제도의 마련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애성인 교육경비에 대해 공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지원의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성인 교육시설 운영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장애성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말

장애인이 비정상이 아니라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보는 일반인이 비정상이고, 장애인이 없는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 장애인이 있는 사회가 정상이고 건강한 사회이다. 이런 사회는 장애인을 교육에서 배제하지 않고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장애인 교육이 학령기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성인에 대해 그들의 특별한 교육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평생학습의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장애성인이 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원하는 경우 언제·어디서라도 그들의 욕구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장애성인 교육의 제공을 위해 장애성인 교육체제를 확립하고, 장애성인 교육시설을 확충하며, 장애성인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런 장애성인 교육의 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 장애성인 교육 업무를 부과하고, 장애성인 교육 장학기능을 부과하며, 장애성인 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일반성인 교육시설에 장애성인을 통합교육 프로그램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며, 장애성인 교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특수교육기관의 운영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장애성인 교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실태를 평가 개선하고, 장애성인 교육시설에 장애성인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하며,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극히 부족한 제안이지만, 이 제안은 장애성인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제안이다. 이 제안들이 정부의 적극적·능동적인 의지와 정책 추진에 따라 제대로만 해결된다면 장애성인 교육의 모습은 지금과

는 완전히 달라질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장애성인 교육시설과 관계자들의 지니고 있는 내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장애성인 교육이 틀을 제대로 잡아가지 못하는 이유에는 장애성인 교육시설과 관계자의 이기주의라는 문제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장애성인 교육체제의 확립과 장애성인 교육의 활성화는 구호로만 그치고 제자리에 머물고 말 가능성이 많다. 장애성인 교육시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장애성인 때문이다. 장애성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각 부처나 시설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부처나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성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장애성인은 수요자이고 부처나 시설은 공급자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의지도 분명히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하지만, 장애성인 교육과 관련되는 부처와 시설도 모두 장애성인을 중심에 두고 공동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무섭 (2001).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에 따른 특수교육의 역할과 과제. *현장특수교육*, 8(1), 8-17.
- 교육부 (1998). 평생교육기관 편람
- 교육인적자원부(2004). 특수교육실태조사서
- 김영화 (1999).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재구조화와 성인학습체제 개혁. *교육학 연구*, 37(2)
- 김중서 외 (1993). 평생교육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주영 · 김병하 · 이미선 · 이유훈 (2000). 특수학교의 재구조화 방안.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보건복지부 (2000). 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
- 성낙돈 (2000). 한국 민주주의 시민교육 평가 : 참여사회 아카데미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연구*, 6(1)
- 윤점룡 (1999). 특수교육 정책의 과제. 21세기를 향한 특수교육의 과제. 특수교육학회. 1999년도 춘계 학술 심포지움 자료. 23-66.
- 이상오 (2001). 장애성인교육의 철학적 기초 : 교육인간학적 접근. 장애성인교육의 새로운 모형과 과제. 한국성인교육학회. 2001년 봄학술대회자료집. 1-28.
- 정동영 (200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 국립특수교육원. 2001년 특수교육 정책포럼 자료집, 71-124.
- 정동영 · 정동일 · 정인숙 (200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정동영 · 정동일 · 정인숙 (200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향 탐색. *특수교육*. 제2권 제1호, 5-35.
- 정동영 · 정동일 · 정인숙 (2004). 장애인과 평생교육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 구축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7(1). 1-34.
- 정동영 · 김용득 · 김종인 · 김주영 (2000). 특수교육 비전 2020.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조홍식 (2001). 장애인 평생교육체제 구축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 국립특수교육원. 2001년 특수교육 정책포럼 자료집, 21-33.

- Ashman, A., & Elkins, J. (1995). A life-span approach to education. In A. Ashman & J. Elkins (Eds.). *Educat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Sydney : Prentice Hall, 545-566.
- Dave, R. H. (1976).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 Some methodological aspects. In R. H. Dave. (Ed.).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Oxford : Pergamon Press.
- Nirje, B. (1969). The normalization principle. In R. Kugel & A. Shearer (Eds.). *Changing patterns in residential services for the mentally retarded* (rev. ed.). Washington, DC : President's Committee on Mental Retardation.
- Polloway, Smith, Patton & Smith (1996). Historic change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1(1), 3-12.
- Speight, S., Myers, L., Cox, C., & Highlen, P. (1991). A redefinition of multi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29-36.
- Wolfensberger, W. (1972).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Toronto :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전국장애인이야간학교협회의 필요성과 결성

오 용 균
(장애인이야학협의회 대표)

전국장애인야간학교협회의 필요성과 결성

오 용 균 (장애인야학협회의 대표)

“과거 정부의 장애인교육 정책 제대로 있었나”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관료로 등용시킨 사례가 있고,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장애인정책이 있었음을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몰락으로 현대화 물결과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개인주의 발달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화되었고, 6·25 전쟁과 베트남 파병 후 양산된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어 정부는 너무 많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으나, 5·16 혁명 후 전쟁으로 인한 상이용사에 대한 예우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되고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선천적·후천적으로 발생한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비롯한 복지·고용 등에 소홀히 해 온 결과, 특히 국민의 기본권리인 교육정책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은 소외되었으며, 복지지수 역시 OECD 국가의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다른 부처의 정책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1974년 제정된 소위 ‘특수교육진흥법’은 제정에 불과한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 88올림픽을 전후로 장애인 교육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느낀 나머지 ‘특수교육진흥법’이 대폭 수정되었으나,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약했고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나 큰 결과를 갖지 못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애인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특별교육진흥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장애인이다. 그러나 흔히들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장애 학생을 적용하고, 만 21세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광의의 해석으로 보면 장애로 하여금 교육을 받지 못한 모든 장애인은 ‘특별교육진흥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부

하기 원하는 장애 성인에게도 국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40대의 시각장애인이 정규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권면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와 부모들의 요구에 의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자생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가간학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법령이 없는 사업을 집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지원할 의지가 아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교실에서 되돌려 보냈던 교육정책으로 학교에 가기가 어렵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배움의 고향, 이제 늦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이들은 지금의 ‘특별교육진흥법’ 이전에 낙오된 20대 후반의 장애인이 야학을 다니고 있다고 볼 때 정부는 크게 각성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국민 모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의무가 있는가 하면,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에 차별 받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분명히 성문화되어 있어도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어 관계기관은 이를 직무유기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은 누구나 장애로부터 보장 받은 사람 없어”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비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은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법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그보다 더한 헌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보장해 준다 해도 과거 교실에서 밀려나 교육을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때에는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의 명시는 교육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동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의무교육을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이 당사자에게

권리인 동시에 친권(親權)자에게는 가르쳐야 하는 의무임을 강제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은 국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장애인에게 생명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한 정부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최소한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무상교육제도를 통해 중학교 과정까지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장애로 하여금 받지 못한 장애인이 많다 보면 결국 장애성인은 배움을 위해 장애인야학을 찾게 마련이다.

법과 제도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같은 땅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교육의 권리에서 당연스럽게 배제되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중에 51.6%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연결된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교양뿐만 아니라 취업과 자아성취 등으로 삶의 질과 땄래야 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는 가난을 낳고 그것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악순환이 장애인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장애성인은 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늦게나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야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15개의 장애인 야학은 주중과 야간 또는 주말 등으로 지역과 현실적 특성에 의해 어렵게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도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역시 같은 눈높이로 장애인 야학을 이해 못해 왔다. 교육 관계 기관은 비인가 학교로 바라만 보았지 관심 밖의 일 여겨 왔다.

“장애인야학협의회의 필요성과 결성”

일반 야학과는 달리 장애인 야학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운동을 대부분 겸하고 있다. 교육과 인권이 교실과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

다. 일반야학은 과거 청소년 탈선 방지책으로 권장하던 정책이 유지되거나 문을 닫고 있지만, 장애인 야학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교육의 필요성과 기본권리를 찾고자 하는 장애인 인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을 모르거나 저학력으로 단순히 사는데, 가장 큰 고통은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인관계나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주 많은 걸림돌이 되고, 저학력에 의한 콤플렉스는 정신적인 박탈감마저 갖는다고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다.

결국 배움의 고품을 절실하게 느끼고, 이 고품에 절실하게 느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심정을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 배가 고플 땐 물이라도 마시며 허기를 달랠 수 있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라도 가면 해결되지만, 배움의 고품은 결코 배우지 않고는 대신할 수 없는 일로 늦게나마/이나마 공부를 하려는 장애성인 있고, 특히 장애로 하여금 교육의 기회를 상실했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성인 장애인들은 금전으로 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과서를 제공해 주는 등 교육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며, 배울 공간을 정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장애인 야학은 비장애인야학과 다르다. 장애 때문에 등·하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연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며 이를 위해선 후원자의 손길에 의존해야 한다.

장애인 야학은 등록금, 입학금 심지어 교재비도 받지 않는다. 자생적으로 발생한 장애인야학은 모두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일구어 가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 일반 사립재단의 정신보다 월등한 정신을 갖고 있다 하겠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며 같은 업무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 10월 17일(일) 전국장애인야간학교장단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임대표로 대전의 모두사랑장애인야학교장(오용균)을 선임하여, 대정부

요구와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였으나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서, 하루가 시급하고 열악한 야학에 2006년도부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야학을 고사시켜도 괜찮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성인도 학령기만 넘겼을 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특수교육의 대상자이므로 장애성인만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장 마련과 최소한의 정부지원과 특별교육법에 장애성인도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법률개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장애성인 교육은 정부의 책임 있어”

이와 같이 장애인들은 교육에서의 꿈을 키워 가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열악한 교실, 열악한 재정 등 어느 하나 충족치 못한 환경에 정부는 관심이 없다. 21세 이상의 성인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시청 소관으로 넘기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장애인 인권에 문제가 있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시나 정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평생학습원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장애인야학을 평생학습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루어져야 성인장애인들의 교육권을 회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성인장애인의 교육은 반드시 교육 분야의 소관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야학을 운영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도 많이 있다. 장애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시스템이 문제이다. 업무도 분할로 하면 능률적이다. 즉 야학의 운영재정지원은 교육청에서, 건물의 임대, 관리비, 공공근로자 배정 등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고, 일정 수준에 달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적극 고용창출에 힘을 쓰면 된다.

우리나라는 교육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수라고 해서 소외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소외시킬 순 없다. 국민의 기본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어항 속에 가둬 둔 힘센 고기가 약한 고기를 잡아먹어, 어항이 공해가 되

어 자신도 죽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출발 선상에서 다소 늦었지만 끝까지 완주하며 투혼의 정신을 발휘하는 성인 장애인의 교육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책임이 있음으로 모두의 과제로 함께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줄 때임을 인식했으면 한다.

맺는 말

장애를 가진 장애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하듯 학생만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라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장애성인도 특수교육대상자이다. 다만 나이가 많을 뿐이다. 과거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은 교육 정책을 조금도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현실과 과거사로만 돌리려고 하고 있다. 학력이 낮아 취업이 되지 않고, 사회생활에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활동에 저해를 갖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 야학을 방치할 수 없으며 이들을 적극 지원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본다.

장애성인의 교육은 단순한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식기반을 위한 노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사회생활의 밑받침이 되도록 하는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용과 연계한 고용 창출은 노동부에서 적극 나서는 등 상호 유기적인 체제로 장애성인의 문제를 풀어 갈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장애성인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

이제 장애인 야학은 단순한 봉사와 사랑만으로 시작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못 배운 한을 교육을 통해 자아성취감은 물론 사회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학력 문제를 해소하므로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행복한 장애성인 야학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장애가 점점 늘어 가는 추세로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을 위한 단순한 일반복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부터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같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중을 할 때 선진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야학은 장애인만이 야학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책임지고 키워 나가야 할 장애인 교육이 리모델링된 장애인 야학이 지역사회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장애인 야학의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학교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은 문해 능력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학력 취득에 대한 욕구, 학교라는 사회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 등,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 비록 장애성인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 학령기 장애 학생과의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 참여하지 못해 학교의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 학령기의 장애 학생들과 같이 12년의 긴 교육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진출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은 장애성인들이 이러한 긴 교육 기간을 그대로 받아 들일지 의문임.

○ 한편, 장애인 야학의 경우 아래와 같은 역할을 통해, 이러한 장애성인들의 교육 문제를 효율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장애성인들을 위해 기본적인 문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 검정고시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단기간에 장애성인들의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같은 장애성인들이 모인 학교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또래 문화를 형성해 공동체 생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또한 장애인 야학은 이미 지난 20여년간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왔고, 특히, 장애인 야학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 교육을 제공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취업은 물론 대학 진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아성취감을 이루었다.

- 따라서 장애인 야학이 그동안 민간 교육 기관으로서 장애성인들에게 기여했던 역할과, 장애성인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임을 고려해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야학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 야학 또는 장애인을 위한 민간 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 지원 대책을 언급한 규정도 없다. 다만, 선언적에 불과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들의 교육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만 일부 나열되어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법률 개정으로 공교육에서 감당치 못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개전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제 언

1. 정부는 장애인 야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현 장애성인 야학은 단체로 등록토록 권장한다.
3. 장애성인 야학의 실태 조사를 조기에 끝내고 200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4. 장애성인 야학과 교육을 위해 특별교육진흥법을 2005년도 상반기까지 국회에 상정 처리하여 장애성인야학을 정상화시킨다.
5. 정부는 장애인의 교육, 사회활동 보장, 고용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별표 1> 전국장애인야학 현황 조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 조사 기간 : 2004년 10월 25일 ~ 11월 2일
- * 조사 대상 장애인야학 : 서울(노들장애인야학, 은평장애인야학, 옥수장애인야학, 피노키오장애인야학), 인천(인천작은자야학),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 부산(장애인총배움터), 광주(빛나리배움터, 열린배움터),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 제주(제주장애인야학) 총 11개교
- * 조사 서식 작성 학교 : 서울(노들장애인야학),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 제주(제주장애인야학) 총 4개교
- * 기 조사 서식 작성 기관 : 인천(인천작은자야학)
- * 전화 및 기존 자료에 근거해 조사에 참여한 학교 : 서울(은평, 옥수, 피노키오), 부산(장애인총배움터), 광주(빛나리배움터, 열린배움터)

* 조사 항목

1. 장애인야학 학교 운영 일반(연혁, 조직, 연락처, 예산 등.)
2. 장애인야학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교육과정 개설 현황, 연간 수업일수 및 주당 수업시수 현황, 검정고시 합격률 등.)
3. 장애인야학 재학생 현황
(교육과정별 재학생현황, 장애유형별 재학생 현황, 거주지별 재학생 현황)
4. 장애인야학 교사 현황(교육과정별 교사 현황, 연령 및 경력별 교사 현황 등.)

* 조사 과정 상의 문제점

1. 각 장애인야학의 운영 방식 및 설립 유형이 달라, 일관된 조사 기준으로 조사를 할 수 없었음. 각 장애인야학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상근 직원이 있는 장애인야학의 경우, 조사 양식에 근거해, 체계적인 조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야학의 경우, 조사 양식에 근거해 조사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웠음.

* 조사 결과 자료 차례

1. 장애인야학 지역 분포 및 일반 현황
2. 장애인야학 교육 과정 개설 현황
3. 장애인야학 재학생 현황
4. 장애인야학 교사 현황
5. 장애인야학 예산 현황

1. 장애인야학 지역 분포 및 일반 현황

1) 지역 분포



2) 일반 현황

지역	학교명	설립연월	설립 주체	설립 인허가	비고
서울	노들장애인야학	1993.8.8.	독자 운영	단체 인가	학교운영비 및 교사야식비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제16호로 등록
	은평장애인야학	1988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비인가	사회복지이용시설 내 자원활동 가들이 운영
	옥수장애인야학	2000	대학 동아리	비인가	단국대학교 봉사동아리 운영
	피노키오장애인야학	2003	민간단체	비인가	동대문사회복지관 내 시설만 이용
	등대장애인야학	*	*		
	한나루장애인야학	*	*		
인천	작은자야학	1981	사회복지법인	비인가	성린재활원 내 시설만 이용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학	2001	독자 운영	단체 인가	사단법인 모두사랑
대구	질라라비장애인야학	2000	민간단체	비인가	학교운영비 및 교사야식비 지원
부산	장애인츄배움터	1989	개인	비인가	
제주	제주장애인야학	2004.3.	민간단체	비인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	열린배움터	1988	개인	비인가	학교운영비 및 교사야식비 지원
	빛나리배움터	2003	개인	비인가	학교운영비 및 교사야식비 지원
충북	야간학교늘푸른교실	1994	개인	비인가	(기타 사항 확인 안 됨)

* 등대 및 한나루 장애인야학은 조사하지 못함.

2. 장애인야학 교육 과정 개설 현황

학교명	장애아동 방과후 특수교육	한글, 수학 기초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서울노들장애인야학	×	○	○	○	○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	○	○	○	○	○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	×	×	○	○	○
인천작은자야학	×	○	○	○	○
제주장애인야학	×	×	○	○	×

-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장애인야학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 및 중학교 과정의 검정고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은평작은자야학의 경우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장애성인을 위해 별도의 수능 준비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었음.
-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의 경우는 장애아동을 위해 방과후 특수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음.

3. 장애인야학 재학생 현황

학교명	장애아동 방과후 특수교육	한글, 수학 기초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합계
서울노들장애인야학	-	4	5	8	11	28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	11	-	26	10	7	54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	-	-	5	8	2	15
인천작은자야학	-	14	5	3	5	27
제주장애인야학	-	-	7	7	-	14
합계	11	18	48	36	25	138
조사 안 된 6개교에 대한 추정 장애성인 학생 수						49
총 합계						187

- *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의 경우 유일하게 장애아동 방과 후 특수교육반을 개설해 운영 중.
- * 인천작은자야학의 경우 초등과정반을 초등기초, 초등진급 두 개 과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음.
- * 조사 안 된 6개교에 대한 장애성인 학생 추정 수는 전화 및 이전 자료를 취합해 일괄 합산한 것임.(은평 7, 옥수 11, 부산 8, 빛나리 9, 열린 4, 늘푸른 3, 피노키오 7) 각 장애인야학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서울의 등대 및 한나루장애인야학은 조사하지 못함. 최소 5명 이상의 장애성인들이 각 장애인야학에 재학 중임을 고려할 때 전체 장애인야학의 추정 장애성인 재학생 수는 대략 200여명 정도로 예상됨.

4. 장애인야학 교사 현황

학교명	장애아동 방과후 특수교육	한글, 수학 기초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합계
서울노들장애인야학	-	2	4	6	6	18
대전모두사랑장애인 야학	5	4	24	12	11	54
대구질라라비장애인 야학	-	-	3	3	3	9
인천작은자야학	-	-	-	-	-	29
제주장애인야학	-	-	3	6	-	9
합계	5	6	34	27	24	96
조사 안 된 6개교에 대한 추정 교사 수	서울(은평 19, 옥수 14), 부산(참배움터 12), 광주(빛나리 9, 열린 5), 충북(늘푸른 9). 서울의 등대와 한나루는 조사 불가					67
계						159

- 인천작은자야학 등 몇 개 장애인야학은 한 교사가 교육과정을 중복 수업을 하고 있음. (교사 수가 중복 계산된 수치도 있을 수 있음.)
- 교사들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의 경우 교사 전원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노들장애인야학의 경우도 전체 교사 18명 중 6명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학생 또는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인천작은자야학의 경우 29명의 교사 중 17명이 직장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5. 장애인야학 예산 현황

학교명	2003년도 수입	2003년도 지출	2004년도 수입 예산	수입 종류	지출 종류	비고
서울노들장애인야학	121,840,000	121,840,100	130,001,200	후원금 학교운영비(국비, 시비, 구비) 수익사업	차량운영비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 9,150,000원 지원
대전모두사랑장애인 야학	46,404,713	46,404,713	84,620,000	후원금 (시비, 구비 일부)	인건비 사업비 학교운영비	
인천작은자야학	12,800,000	12,800,000		학교운영비(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 사무비	

-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 제출한 장애인야학은 노들장애인야학,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 인천작은자야학 등 3곳임.
- 부산장애인참배움터, 광주빛나리배움터, 광주열린배움터, 충북야간학교늘푸른교실, 피노키오장애인야학 등 5개교는 재정 구조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 제출하지 않았음.
- 은평작은자야학, 옥수장애인야학 등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학교 운영비 일부를 보조 받는 경우가 있었음. 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음.
- 제주장애인야학의 경우는 2004년 3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안을 아직 작성하지 못했음.
- 교육부 및 시 교육청에서 지원금 전무

<별표 2>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 조항 분석

1. 대한민국 헌법

○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에 명시되어 있음.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00010호]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 2002년에 발간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전체의 51.6%임. 심지어 무학인 경우도 21.5%나 되었는데, 이를 실제 등록장애인 수로 환산해 보면, 등록장애인 1,433,548명(2003년 12월 말 현재)중, 308,212명이 무학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단, 미취학 상태인 장애유아가 포함된 숫자임.)

<표 1> 재가장애인의 교육정도 — 장애별

(단위 : %, 명)

교육정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자폐)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전체
미취학	0.3	2.6	0.8	0.6	3.6	8.4	31.8	-	-	2.0	1.7
무학	16.5	29.3	25.2	38.7	26.8	18.0	1.8	6.5	1.7	16.6	21.5
초등학교	30.3	32.1	28.4	26.9	29.5	35.7	28.2	18.3	30.1	37.0	30.1
중학교	14.6	11.5	12.8	10.6	15.0	17.2	20.3	23.6	16.9	18.1	14.2
고등학교	28.7	16.1	23.2	17.0	23.6	20.7	17.9	36.7	33.1	19.7	24.1
전문대	2.4	1.9	2.1	0.8	-	-	-	1.2	7.3	0.9	1.9
대학	6.4	5.5	7.0	5.1	1.5	-	-	13.3	5.2	5.7	5.8
대학원	1.0	1.0	0.6	0.4	-	-	-	0.4	5.8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전국추정수	(1,779) 597,851	(622) 220,964	(512) 180,402	(452) 146,199	(86) 26,634	(277) 93,289	(30) 13,275	(156) 50,068	(67) 25,149	(122) 43,874	(4,123) 1,397,705

註: 무응답 2명 제외

자료 : 卞倬榮 외, 「2000年度 障礙人 實態調査」(서울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2001), p. 127

2.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에 의거해, 모든 장애인들이 연령, 능력,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충분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4.3.5 법률제07184호]

제18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특히, 제18조 1항의 경우,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학령기 장애인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학령기가 지난 장애성인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조항임.

3. 교육기본법

○ 이러한 조항은 교육기본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71호]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특히, 장애성인의 경우,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그동안 학교 교육의 기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것임. 이는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한 것임.

○ 뿐만 아니라, 제18조(특수교육)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함에도, 장애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성인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고 있지 않아 왔음. 이것 역시 교육기본법 제18조 위반 사항임.

○ 장애성인의 교육 기회 보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시 조항은 없으나, “연령, 나이 등의 제한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 교육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해, 장애성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및 해당 시도 교육청은 교육의 대상자를 21세미만의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두고 있고 있기 때문에, 장애성인을 위한 특별한 교육 지원 대책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이들 장애성인들을 방치해 두고 있는 형편임.

4. 특수교육진흥법

○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합의 사항 중 “초, 중등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내용에 의거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8일,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03~2007)”을 수정했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계획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 그러나 하루가 급한 재정상 야학으로는 2004년부터 25005년까지 조사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장애인 교육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모르고 있다는 것임

- 5년을 주기로 특수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 특수교육 기초자료를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4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5년에는 “장애성인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함.
- 장애성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비, 야학운영비(학생수 기준), 교재·교구 구입비, 차량운영비 지원방안을 검토함.
-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야학 등 장애성인 평생 교육 실태를 조사한 후 지원 방안을 강구함.

○ 교육부는 위와 같은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아래와 같은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수립했음.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06742호]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④ 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3>

○ 위의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제3조 3항에 의하면 “이 계획에 대한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확충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특수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이에 근거해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을 지난 10월에 다시 작성했으며, 이에 대한 업무 추진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성인 교육 지원 대책에 대한 계획만 수립해 놓고, 현재 세부 정책 마련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장애성인의 교육 실태조사 및 장애인야학 지원 대책에 대한 예산 책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는 분명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2항 및 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상황은 지역 교육청도 마찬가지임.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 대책을 특수교육보진과에서 수행하고 있음. 또한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장애성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시, 도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집행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도교육청은 중앙의 지침만 기다릴 뿐, 실질적인 종합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는 분명, 시도 교육청의 직무유기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 속에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서,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 대책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해 수립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실임. 따라서 장애성인의 교육 문제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해당 부서 역시 특수교육 전담 또는 담당 부서에서 진행해야 함.

5. 평생교육법

○ 한편,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 대책과 관련한 법률로 평생교육법을 예로 들 수 있음. 평생교육법이 비록, 학령기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 대상자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등의 특별한 언급이 없음. 또한 평생교육법이 지원하는 평생교육 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장 총칙

-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장 평생교육시설

- 제2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3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4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5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6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7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위와 같이 평생교육법은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해 학교 교육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언급이 없음. 현재 전국야학협의회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편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은 신고가 아니라, 인허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설립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 이에 따라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 근거로 평생교육법을 예로 들면서, 장애성인의 교육을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언급일 뿐임. 뿐만 아니라,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초, 중등교육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학령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해 초, 중등 교육법 이외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은 분명,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요구하는 시책이 필요함.

장애인학생을 위한 대학의 재구조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 형 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장애인학생을 위한 대학의 재구조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 형 수 guernika@hanmail.net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상임활동가)

1. 장애인학생의 지원은 모든 학생을 위한 지원이다.

1) 장애인특별전형제도의 의의

1994년 말 서강대, 대구대를 시작으로 장애인 특별 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면서 1995학년도부터 장애인이 우리 나라 6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학생’이란 근거를 갖고 입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장애인의 고등교육이 명문화된 제도를 통해 대학의 선발을 거치게 됨으로써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학이란 곳에 ‘장애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이전까지 장애인에 대한 대학들의 일련의 태도에 대해 분명치 않았던 사회적인 평가나 기록, 분석들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보다 명확해 지고 책임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그 전까지 각 대학은 장애인의 입학과 교육에 대해 대학 임의대로 자의적인 해석과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구제를 반복해 왔다. 차별의 경우, 이때까지 대학은 대학의 권위와 이미지 추락(특히 해당학과), 해당학과의 학업 수행과 사회적인 진출(전공 관련 취업)의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전근대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장애인을 입학이나 재학 중 지원을 거부해 왔었다. 또한 구제의 경우에도 탄원이나 민원, 대통령의 명령 등에 의해 시혜적으로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95학년도에 시작한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애인 교육차별 근거를, 장애인의 대학 수학 능력여부가 아니라, 각 대학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능력여부’로 바꾸어 놓았다.

즉, 대학이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교육 지원 환경의 양질(良質)이, 장애인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공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장애인특별전형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적 제도를 통해 장애인학생의 지원과 책임은 그 장애인학생이 아니라 대학 자신의 능력,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대학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특별전형 제도 실시의 1차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특별전형이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각 대학의 선택사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시혜적이든 각 대학의 입학 요강에 장애인 특별전형을 명시한 것은, 곧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입학 여부가 대학의 경쟁력임을 장애인과 모든 학생, 학부모, 사회에게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학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특별한’ 장애인에게 별도의 필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허위 과장 광고에 불과하다.

2) 또다른 차별의 기제, 장애인특별전형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특별전형을 고민할 때, 충분한 준비와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대학내에 장애인 학생의 교육 환경을 생각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로 대부분의 국공립 대학과 지방대학은 그동안 장애인 학생을 합법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배제해 왔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다, 장애인 학생에 대한 환경의 미비 문제와 장애인 학생의 입학 제도는 오히려 엄연히 분리 해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논리적으로 ‘학생’으로 인정된 ‘장애인학생’을 그 개별적인 특수성을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여학생을 받으면서 여학생화장실은 화장실은 따로 만들지 않고,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생들을 입학시키면서 컴퓨터 등을 비롯한 필수기자재를 구비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장애인 학생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학생’이며 대학은 효율성을 꾀하기에 앞서 학생에

게 교육적인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장애인학생에 대한 지원을 ‘소수를 위한 과잉투자’라는 관점으로 장애인학생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배려와 안락(安樂)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비장애인학생이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장애인이 되는 경우나 일시적인 장애인이 되는 경우에, 모든 학생들의 권리 역시도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에 불과하다.

대학이 불공정계약 약관(約款)을 학생들에게 늘 은폐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요컨대, 장애인학생의 지원과 책임 문제는 그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 환경을 지원 않는 대학의 ‘능력부족’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학생을 위해 비장애인학생의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시각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동등한 교육권을 위해 장애인학생의 지원이 우선한다는 총체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은 장애인을 부담과 손실 비용발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투자가치를 지닌 학생으로서** 인정하고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개발하고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제도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시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 -칸트-

2. ‘장애인학생’에게 대학의 본질적 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돌려주라.

대학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한다는 본질적인 기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면 이것은 장애인 학생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전국 어느 대학도 이 부분에 대한 통계나 지원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예 ‘학부과정도 어디인데’ 라며 인식의 사각 지대에 있을 뿐이다.

장애인학생의 경우, 장애인특별전형이 대학입학의 문을 열었지만 ‘학부제’라는 보다 강력한 경쟁과 능력주의 벽 앞에 가로 막혀 있다. 장애인학생은 각 개인의 계층, 계급 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 즉 전문고급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장애인 학생의 취업, 고용을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 학생을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창출과 대학의 재구조화의 차원이다.

이것은 대학이 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에게 반강제적으로 통합된 공간으로서 어느 한쪽에만 통합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또한 지원의 연계와 완결성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요구와 필요가 다양한 학생이 있기 마련이고 이에 대학은 다면화된 환경을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교육 사회를 만들어 간다. 바로 그 본질에서 장애인 학생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학생이기 이전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기 이전에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학생의 지원은 단순히 교직원과 교수의 이해와 인식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상호지원과 책임 있는 교류를 통한 장애인 학생을 오롯이 대학 사회의 한 구성원과 주체로 자리매김 하는 대학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쌍방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장애인학생의 지원 목적이 단순한 학습의 수월성과 안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양성과 존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학생을 ‘각 대학의 학생’으로 길러내는데 실패할 뿐이며, 장애인학생을 사회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를 향해 투매(投賣)하고 모든 책임은 장애인학생 개인의 인간승리의 몫으로만 남을 것이다.

대안은 장애인 완전 참여와 지원 방향을 대학에서 민주적인 합의와 의사결정을 통해 만들고 그 구조에서 장애인학생 지원을 책임질 전문가, 전문 인력을 대학 내에서 새롭게 배출함이다.

이런 과정으로 대학의 주체들이 장애인의 다른 시각, 다른 관계, 다른 문화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장애인학생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한 훌륭한 교육장으로 중간의 완충지대로 대학이 개혁적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이제 그 다양성과 본디 정체성을 위해 **‘학력제일주의’를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 수능 점수와 단순 학점으로만 장애인학생을 평가한다면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은 열등하고 공포스런 존재일 수 밖에 없다.

어떤 학생이 대학을 지원할 경우 스스로 가고자 하는 대학을 경정하는데 이를 대학

은 합리적인 근거로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애인학생은 그렇지 않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정서 장애인학생의 특별전형거부가 차별이라 판정되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적용, 자폐나 학습장애인까지 그 외연이 넓어지자 각 대학 입학 관리처는 그런 학생에 대해 에이즈 접촉과 같은 공포를 드러냈다. 대학이 장애인학생에 고민이 있다면, 그런 장애인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3. 대 안

1) 교육 클러스터(Cluster)구성으로 완전한 통합교육 혁신 지역사회 완성

최근 들어 새로운 지역발전과 도시 개발을 위해 산업 클러스터(Cluster)라고 하는 각 도시의 유기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총체적으로 지역과 도시를 발전시키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장애인학생을 위한 지원정책과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유의미하다.

대학이 아무리 장애인학생 지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전달체계와 임상적 경험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따라올 수 없으며 각 대학이 감각 장애인학생을 위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한들, 지역의 점자 도서관의 실력이나 각 지역 구청에 고용되어 있는 수화통역사의 책임성을 능가할 수 없다.

아무리 직업재활과 통합교육이 대학에서 완성되어도 지역 사회에 참여하거나 기업에 고용되지 않으면 부질없는 것이다. 각 대학은 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보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지역 사회가 장애인 학생을 통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학생을 양성하고 통합의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와 조건 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에서 사회참여와 통합교육의 비전 제시자로서의 대학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2. 장애인학생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제도화와 정례화를 통한 상향식 합의기구 구성
(학칙으로 명시)
3. 대학전체예산과는 독립된 별개의 예산과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정책이 장애인학생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정책이 장애인 학생을 견인하도록 함.
4. 장애인학생 지원기구를 단순 서비스 기관이 아닌 장애인 학생지원에 관한 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구성원간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5. 장애인학생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졸업이후 사회참여의 능력을 기르고 대학 사회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일방적인 지원정책은 오히려 장애인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비장애인학생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예. 특별 장학금)
6. 장애인 학생의 경우 자신의 장애를 반드시 대학에 공지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자신의 개별적인 지원을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원했을 경우에만 그러한 개인 정보를 대학은 요구해야 한다.
대학은 다만, 장애인 학생에게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학생에게 충분히 알릴 책임이 있을 뿐이다.
7. 대학의 모든 주체는 학생으로서의 장애인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보와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경우에도 장애인학생이 통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8.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여러 지원과 조항들을 명문화하고 지침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현재 한국의 대학들에 있어서 장애인 특별 전형입학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이익을 얻고 더 나아가 경제적 수익도 얻는 ‘홍보’와 ‘재정 사업’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2001 정영석).

그것은 지금 당장 장애인 대학 교육의 현실적인 토대가 열악하다고 급진적이고 전체적인 개선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자기 능력껏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하고 수월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가까운 미래에 굳건히 법과 제도로

약속되지 않는다면 단지 대학에서 장애인의 수가 늘어났다고 장애인의 교육 문제에 있어 ‘차별’이 완화되었다거나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지금 대학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은 학교 당국이 권위적이고 시혜적인 태도로 장애인 대학생들을 ‘대상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필요한 교육 환경이나 서비스는 자선적이고 잔여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장애인 대학생들의 대상화는 장애인 대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이 결정론적으로 열등함에도 ‘특혜’를 입어 대학에 입학했으며 이는 비장애인 학생들의 권리를 희생시킴으로써 가능했다는 인식을 지니게 했다.¹⁾ 결과적으로 장애인 대학생들의 교육 환경이나 교육권 보장은 다른 비장애인 대학생의 교육권 침해할 것이라는 부담을 장애인 대학생들에게 안도록 하였다.

장애인 대학생들의 무임승차의 자기인식은 교육 환경의 불이익이나 고통 등을 감수하고 오로지 개인의 초인적인 성실로 대학 사회 내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차별과 억압의 자기 동일성 내지는 합의를 만들어 낸다. 이는 ‘차별’에 대한 무력화는 결국 장애인 교육 환경 투자 회피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얼마전 에티오피아에서 유학 온 카이스트의 척수장애인 학생의 기사는 장애인의 권리옹호가 법과 제도없이 오로지 ‘온정’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전산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테게그니 마로씨는 에티오피아의 명문대인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올A’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 한국 정부의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다.토플(TOEFL) 성적도 6백40점으로 만점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은 마로의 신체장애를 문제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아디스아바바대 영어교육학과 교수인 부친이 강력히 항의한 뒤에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고 한다.²⁾

1) 이러한 인식은 많은 교수와 교직원들을 통해 장애인 학생들에게 언어 폭력과 인격권 침해 심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까지 비난을 하는 모독좌를 당한 경험의 소산이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장애인들이 교육 환경을 요구할 경우 등록금 인상 등을 제가하며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2) 2003년 07월 23일 중앙일보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조사 평가' 역시 대학 당국의 부담이 되지 않는 한에서라는 단서가 늘 따라 붙는다.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 대학과 사회가 부담이 된다면 장애인 학생을 차별해도 된다는 논리가 팽배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5학년도부터 모든 국공립 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을 '권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정책이 아니다. 가장 공적인 영역이 강한 국가마저 장애인고등교육 정책을 '권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장애인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장애인 학생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학생의 고등 교육의 문제는 고등 교육과정의 진입과 수행, 그리고 취업등과 같은 향후 진로 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이며 다양한 영역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장애인 개인이나 한 대학에 떠맡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과 공공 정책으로서의 개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신 창 현
(시각장애인 아카데미)

장애성인 평생교육

신 창 현 (시각장애인 아카데미)

발제자의 의견대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적 욕구는 일반성인들의 그것에 장애극복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되므로 욕구의 범위와 다양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언제 어디에서라도 무슨 유형의 평생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발제문에서 주로 강조한 장애성인 교육시설로서의 장애인분리교육시설을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 근간으로 생각한다면 지역마다 그와 같은 시설을 확보 운영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의 실소비자 확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의 유형이 극히 광범위한 것을 감안한다면 한 시설에서 그 모든 교육을 제공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서울에 5개소 정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유사하고, 소비자들의 수효도 그다지 많지 않고, 흔히 같은 사람이 여기 저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여러 번 받기도 한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에는 교육적인 내용으로 보기에겐 어려울 듯한 사업들도 많이 있다. 교육을 인간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모든 형태의 활동이라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물론 모든 서비스가 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훈련이나 지도를 일정기간 필요로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정된 정의를 적용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비교육적인 서비스가 복지관 서비스의 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일반 문서를 점자나 음성자료로 변환해 주는 자료제공 서비스(최근에는 흔히 학습지원 서비스로 통용됨)는 항상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것도 음악이나 특정 외국어 자료, 자연과학자료들의 번역서비스는 그 적체율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넓히는 방안은 장애인기관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일반 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개선과 제도

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 방법은 당연한 선택이다. 물론 장애인기관으로 일반인들을 유도하는 방법을 언급하였지만 그것은 일종의 수동적 통합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인이 일반인들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미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도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움직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다. 그렇다고 보면 평생교육시설들도 서서히 장애인을 교육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 확보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유도해 나가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도 보다 많은 형태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열리고, 같은 교육이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이나 강사에게서 받는 선택의 여지까지도 생기게 된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의 범위가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서예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자동차나 열차, 선박 항공기 따위의 운전 등은 시각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시각을 촉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은 모두 시각장애인들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일반인들은 눈을 못 본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활동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심하여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라도 체계적인 시각장애인 인식을 주제로 한 연수과정을 평생교육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이렇게 근거 없는 거부 현상은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기회를 결정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은 교재의 확보 문제이다. 앞에서 자료변환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인들처럼 필요한 교재를 일반서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는 데에서 기인한다. 현재 점자로 자료를 옮기는 일에 종사하는 점역사들은 그 종류가 국어, 영어를 비롯한 몇몇 외국어, 음악, 수학과 과학 등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음악이나 과학 점역사들은 그 수가 매우 적어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분야의 교재는 스캐너와 문자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능을 이용하기도 곤란하여 공급은 더욱 달리게 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자료변환 제공서비스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숙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의 접근성 향상도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다. 수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도, 확보할 수도, 주고받을 수도 있는 인터넷의 음성에 의한 접근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T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매우 취약하다. 이는 정부 사이트, 학교 싸

이트,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모두 차이가 없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텍스트 링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의 내용과 양은 더욱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이 정도의 자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의식은 바닥수준임에 틀림없다. 우선 정부와 교육기관들부터라도 웹사이트의 음성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웹접근성과 자료변환서비스의 실질적인 발전만 성취되어도 시각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는 크게 넓어질 것이다.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계 개선

이 옥 경
(연세대학교 장애학생 담당 학사지도교수)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계 개선

이 옥 경 (연세대학교 장애학생 담당 학사지도교수)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실시되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인의 수적 증가는 대학 내 장애학생이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그 변화의 속도나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장애인의 고등교육권이 인정받고 취업을 통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갖게 된 것은 큰 의의라고 하겠다. 그러나 김 주영 발표자의 발표대로 특수교육 대상자 특례입학전형의 실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편견이나 무관심을 고려하더라도 대학 내 학생관련 정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입학과 지원체계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1. 입학정책의 문제

1) 입학 장애인 수의 감소

입학정책에 있어 첫 번째 문제는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해마다 입학하는 장애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은 선진국 수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 뿐만 장애학생의 요구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태인데 장애학생의 절대 수가 적어진다면 대학 본부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장애학생 지원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소수의 장애학생에 대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대학 내 장애학생의 학습 환경이 나빠져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일정 기준에 오를 때까지는 대학 크기에 맞는 장애학생의

입학이 보장되어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장애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 유형은 이전의 장애유형에 더하여 신장, 심장, 호흡기, 안면 장애 등 더 넓게 장애유형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유형은 예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권의 확보 차원에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장애유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경증 장애학생의 증가

이것은 발표자가 지적한 바로 입학절차에서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며 또한 연세대학교와 같이 장애학생의 특별전형 신청자격 중 수능 등급 제한이 있을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본교와 몇몇 학교에서 일정 수능 등급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였는데 이 자격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추려면 일반 학교 출신이고 장애가 가벼울수록 유리하다. 이 부분은 필자가 경증 장애학생들이 충분히 일반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음에도 상위권 대학 진학의 발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특례입학 전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나 학습능력이 뒤떨어지는 학생의 입학 후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중증 장애학생의 대학진학을 확대할 필요와 함께 일정한 학습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거나 혹은 선발 후 학습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대학 내 지원체계의 문제

1)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 설치의 문제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중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듯이 입학정책은 있으나 이와 연계한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체계 정책의 부재는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불편 없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개입하고 지원 전담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상적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

부분의 대학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일수록 소수의 장애학생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전문가를 고용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모든 대학에 전문가 고용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특히 국가의 지원이 없는 사립대학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더구나 입학하는 장애학생의 절대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당국이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예산을 유지 혹은 증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모든 학교에게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기 보다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다. 전담기구의 유무보다는 교내 어떤 부처에서 담당을 하던 간에 장애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needs를 알아내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내 자원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의 장점은 기존의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장애학생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은 전문적 서비스가 부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단점은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즉 교육부 내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전문가를 두거나 혹은 지역별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 담당인력들로 하여금 전문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얻도록 한다면 학교마다 전문가나 전담기구가 없는 단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 방법은 재원이 부족한 대학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모델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맞는 전담기구 모델을 제시하여 모든 대학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델은 전체 학생 대비 장애학생 비율과 대학과 전문대학, 국립과 사립을 구분하여 적절한 장애학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들이 주도적으로 모델 연구와 개발에 힘써 모범적 운영을 통해 사례를 늘려 가야한다. 이러한 국립대학의 사례와 모델을 바탕으로 사립대학들은 각자의 학교 사정에 맞는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장애학생 전담 기구 운영에 대한 지원과 보상 체계 강화

국립대학에서 운영을 하거나 사립대학에서 운영을 하거나 학교 당국은 예산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 국가는 국립과 사립대학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립대학

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2003학년도에 실시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통해 전국 대학의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고 우수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평가했다. 향후 이러한 평가 작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대학에게는 대학종합평가에 가산점을 주어 교육부 지원이 늘어나도록 보상을 해주고 우수하지 못한 평가를 받은 학교에는 개선을 위한 조건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개선 명령을 받은 대학에게는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 체계 개선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지속적 관리 등의 인적 자원 지원도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3) 대학 내 비공식적 지원 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장애학생들이 겪는 혼란만큼 비장애학생과 교직원들이 겪는 혼란도 크다. 장애학생 특별전형 제도 실시의 중요 목적 중 하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 당국은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 구성원들에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교육을 통해 대학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장애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런 사회통합의 모습이다. 이러한 교내의 비공식적인 지원 체계의 형성은 대학 당국의 예산부족과 국가의 지원 부족 등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도 자원부족의 해결의 목적에서도 대학 내 인적자원으로 이루어진 비공식적 지원체계를 대학 당국이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와 직원들에게는 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특강을 실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 좋은 실천 방법이고 비장애학생들에게는 입학식 전 오리엔테이션이나 단과대학별 수련회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콘텐츠를 대학 당국이 개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육부에서 연구, 개발하거나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사례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교내에 자원봉사를 활성화도 통합교육의 목적달성과 비공식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재 본교에서도 자원봉사의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꼭 학점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에서 장애학생 지원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해가는 교내 교수들과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학교의 학습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과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작은 보람을 느껴가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키운 장애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이 갖은 가능성도 많지만 한계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전체의 문화적,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정책이 필요하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장애인 복지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이고 보상적 정책이 아니라 인간으로써 당연한 권리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할 때에 이루어진다.

시각 장애 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과제

안 승 준
(한국 시각장애인대학생회)

시각 장애 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과제

안 승 준 (한국 시각장애인대학생회)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나 기본권 해결이 중요한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권리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권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방법과 얼마만큼의 양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또는 주어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중증 시각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시각장애 학생의 입학이나 전학을 허용하는 일반 중·고등학교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입학을 허락한다 해도 관서위주의 수업방식이나,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학교공간에서의 통합교육은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전국의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은 이료교육이라고 하는 직업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부터 진학을 원하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와 닿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부터 서울맹학교에서 인문반이라는 이름으로 진학만을 위한 과정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아직 전국에서 오직 15명 정원의 한 반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방과후의 개별적인 학습이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학습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진학공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나마도 교재와 참고서적의 점자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다. 수능의 경우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얼마나 많은 교재를 접해봤느냐는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인데,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참고서 한권을 점자화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서점에서 일반 참고서를 구입하여 점역기관 등에 의뢰하는 이중

고를 겪어야만한다. 2~3배에 달하는 가격지불도 감수해야하지만, 점자화를 위한 인력의 부족으로 보통 몇개월씩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그나마도 수학이나, 과학 같은 점자화가 어려운 과목은 아예 의뢰조차 퇴짜를 맞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파일공개로 어느 정도는 시간적 물질적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나, 불법복제나 무차별적인 유포를 우려하는 출판사들이 꺼려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파일의 공개시 시각장애인의 교육목적으로 점역한 다음 공개하면 우려할 염려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점역하여 점자화 된 파일로 공개할 경우 역점역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일반 학생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유포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모든 출판물의 출판시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방안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특수학교의 여건상 다양한 적성에 맞는 진학진로 상담 및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나 학과의 선택폭은 좁아지게 된다. 특례입학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학습여건이 유리한 경증 시각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례제도의 경우 장애유형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학습환경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평등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쉽게 진학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줌으로서 전체적인 하향 평등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보다 개별화 된 적용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이며, 특례제도 내에서도 적정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이 아니면, 선발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도 장애의 경중이나 유형에 따라 입학에 제한을 두거나, 여러가지 형태의 각서를 요구하는 등 차별적인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대학에 입학 한 후에도 시각장애 학생들이 받게되는 학습의 어려움은 절대 감소되지 않는다. 전공서적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점역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림이나 기호화 되어있는 책들은 일반 점역기관에서는 도저히 점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학강의의 형태도 시각장애인들이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다. 판서나 프리젠테이션 위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수업들은 수업시간 내내 무슨 내용 인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 경우도 있고, 매시간 교수님들께 설명을 드려도 장애를 접한 경험이나 관련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분들은 매 번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의 경우 각 대학출판부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제한된 출판사의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만큼 학교측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교재수급의 문제는 어떠한 측면에서는 중·고교 교재에 비해 수급이 용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의 형태나 유인물 등의 경우에도 학생과의 충분한 대화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 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이 대중화 된 만큼 강의노트나 유인물 등을 파일화하여 학생이 받아볼 수도 있고, 클래스 내의 학습도우미를 선정하여 도움을 주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측에서도 근로장학금이나 봉사점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장애학생 도우미를 모집하여 일반 학생들에게 맞춰져있는 강의형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문 발송이나, 자체적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교직원 교육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인식 교육식개선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외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공간 및 휴게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점자프린터나 컴퓨터, 확대 독서기, 녹음기 등의 기자재를 갖춘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정보접근성이 용의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시내용이나 공지들에 대해 개별적인 메일이나 정해진 사이버 공간에 제시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홈페이지 접근이나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시간표 작성은 역시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간단한 써버 수정으로 시각장애인들도 음성합성 프로그램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작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하교와 국가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장애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본다. 아직도 사회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만연되어 있다. 같은 능력 혹은 더 나은 능력을 가졌어도 장애는 커다란 감점요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는 장애학생의 능력을 검증해주고 국가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과 비차별적인 미래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각대학생 학습실태와 대안

정 민 자
(한국 농아대학생연합회)

청각대학생 학습실태와 대안

정 민 자 (한국 농아대학생연합회)

◎ 들어가며

1995년부터 시행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도입으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에 장애 학생과 비 장애학생이 학습권과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평등 조치 제도라고 반가워하고 있으나 1995년에는 8개 대학 113명에서 2001년 54개 대학 421여명으로(교육 인적자원부 2001) 증가하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특례입학 제도가 형식에만 그치고 대학 입학 후 교육과 학습에서 일반 학생과 동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행정적인 지원체계 확립, 다양한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과 교육지원 체제의 부족은 심각한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은 장애학생들이 다른 모든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학습지원서비스로 보다 더 나은 질적인 학습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최근 조사한 결과 장애학생들 중에 휴학, 자퇴 빈도가 가장 높은 청각 대학생들은 교육을 받는데 학업상의 배려를 받지 못하여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청각대학생의 학습 환경을 통해 청 각장애인 유형별로 맞춤 서비스, 교육권 확보를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청각장애인(농인)의 유형 및 학습 환경 배경

*청각장애 정의

청각장애란 청각기관의 어느 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이상이 생겨서 청력이 지속적 또는 항구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2003년 9월 29일 개정)은 제2조에서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청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3년 5월 1일 개정)은 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청각장애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④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청각장애인의 유형

1) 수어(수화)를 구사하는 농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수어는 우리나라 언어에 근거하여 생성되었지만 문법적 언어 체계와는 무관하게 농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농인의 생의 전 주기에 걸쳐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언어다. 하지만, 청력의 손실로 인하여 주위의 소리나 타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수어를 구사하는 농인을 단순히 청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아닌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민족으로 봐야 한다. 현재, 보통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및 수많은 음성 언어가 있으며, 이 외에도 각 나라의 농인

들이 사용하는 한국 수화, 미국 수화, 일본 수화 등 시각 언어인 수어가 있다. 수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 언어와는 문법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며, 관용적 표현에 있어서도 수어 고유의 독자적인 표현이 있는 등 수많은 ‘외국어’ 중의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우와 관심이 필요하다.

2) 구화를 구사하는 농인

청각장애를 가졌지만 언어 훈련 및 보청기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한 청능 훈련을 받아 음성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가능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농인이지만 청인의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생활하고 교육받아서 사고방식은 농인보다는 청인에 더 가깝고, 대부분 농인의 모어인 수어를 잘 구사하지 못 하는 편이다. 하지만, 청력의 이상으로 언어의 습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청인처럼 완벽한 언어 구사능력이 부족하며, 상대방의 입모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수어를 구사하는 농인과 음성언어를 구사하는 청인 사이에서 그 입장이 뚜렷이 구분되고, 청능 훈련에 따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어만을 구사하는 농인보다 저마다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같은 구화를 구사하면서도 사람마다 다르고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 특성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정의 내릴 수 없는 애매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구화를 구사하는 농인에게도 역시 그 특성에 맞는 대우와 관심이 필요하다.

◎ 청각장애인의 학습 배경

농인의 학습 환경은 교육 내용, 방법, 지식 습득 능력 등등 청인과 많은 차이가 있다. 청인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배우고 인지하면서 어린아이가 한글을 자연스럽게 깨치듯이 좋은 싫든 어디서나 교육을 받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만, 농인은 듣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자연스럽게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어려서부터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농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 가나다라 한글을 배우기 전에 아에이오우 입모양으로 언어 인지 훈련을 받고, 그 후에 단계적으로 청능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

는데 짧으면 1년 길면 4년의 훈련 후에 특수학교 유치부를 졸업하고 일반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되거나, 특수학교 초등부로 진학한다. (여기서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을 통합생이라고 한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이하 초중고) 한 반당 10-50명의 학생에 선생님 한 명이 인솔하는 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담임교사가 있기 때문에 농학생, 통합생 모두 학습 환경에 있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특수학교에서는 장애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 없고, 일반학교에서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배려를 많이 해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자리 배정에 혜택을 준다든지, 수업시간마다 학습내용 필기를 돕는다든지, 과제나 공지사항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청각장애학생이 건의하기도 전에 이미 큰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대학교는 조교와 담당교수제도가 있지만 학내 공지사항이나 행사는 대자보,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체 공고를 하는 등 학생 개인별로 신경을 써주는 초중고의 담임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대학은 학생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고 성적을 관리하며 필요에 의해서 담당교수를 찾아가는,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자율적인 분위기다. 통합생은 일반학교의 환경에서 자라고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혼란스럽겠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적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청인과 동등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으로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농학생은 수화를 대화수단으로 사용했던 교육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와 전혀 다른 환경인 대학에서는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 자율적인 분위기 그 자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사소통과 생각 교환이 너무나도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표현하고 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모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생과 농학생 모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등 대학과 정부의 무관심한 교육환경 때문에 피해상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대안

이제 사회는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주된 삶의 장소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추세였으나 이제는 청각장애인들의 세계를 인정하는 추세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도 청각장애 대학생의 유형을 맞춤에 따른 서비스별 지원이 필요하다

1) 수화통역 서비스

● 필요성

강의 시간에 강의 청취 뿐 만 아니라 질문과 답변 또는 토론에 참여할 때 시시때때로 즉각 피드백을 받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각장애 대학생에게는 이를 동시통역해줄 수 있는 물리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만약 음성을 문자로 변환시켜주는 기계가 발명된다면 몰라도 그런 발명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가라사대 카드가 있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반대로 그렇게 변환시켜주는 재활기기가 없다. 때문에, 대체 방안으로 수화통역을 생각하고 있다.

● 농인의 유형에 따른 통역

수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어 문법 및 표현과는 전혀 다른, 외국어 관점의 자연수화(농식 수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어 문법과 표현에 대체로 맞는 방법 수화(문장식 수화)가 있다. 농식 수화는 수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는 농인이 쓰고, 문장식 수화는 구화를 구사하는 농인이 문장 전달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구화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어 농인과 구화 농인 각자의 이해력과 전달력을 높이기 수화통역 서비스에도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수화 통역은 문장식 수화 중심이거나, 농식 수화와 문장식 수화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문장식 수화와 농식 수화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실력이 검증된 전문 수화통역사를 고용해야 하며 단순히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알려주는 정도가 아닌, 전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까지 자세히 전달할 수 있는 대학원

출신 수화통역사를 기용해야 할 것이다.

● 각 과 특성에 따른 통역

대학은 여러 분야의 과로 나누어져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각 과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전공을 나누어 배정받는 방식일 것이다. 인문대와 공대, 의대 등 수업 방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의 특성에 맞는 융통적이고 유동적인 통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수업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바로 성적평가로 이어지는 현실인 만큼 즉시 신속하게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야외 수업이나 현장 수업 등 기타 이외의 상황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과 마다 수업 방식이 다른 것처럼 배우는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른 수화통역과, 모르는 부분을 지나치지 않고 강의 내용을 100% 전달하기 위해서 각 과의 전문용어와 전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수화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 단어를 그 뜻에 맞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화통역이 필요하다.

● 마무리

농인은 수화통역을 통해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우고, 수화통역사를 채용함으로써 고용 창출이 발생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수화뿐만 아니라 외국어 수화에도 능통하고, 각 과의 특성인 전문용어를 알고 이해하는 수화통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수화통역사의 배출이 부족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농인과 대학, 개인과 단체간의 문제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개인과 단체, 국가간의 긴밀한 관계와 이해가 필요하다.

2) 문자 통역 서비스

● 필요성

앞서 말했듯이 농인은 수어 즉 수화(手話)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과 입모양으로 대화하는 구화(口話)를 사용하는 농인으로 나뉘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수화통역으로 대학

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화에 익숙하지 않고 입모양으로 강의를 듣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 특성에 맞는 문자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 문자통역 서비스는 주로 대필제도로 이루어지는데, 노트정리 하는 것처럼 쉽게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노트정리에 비해서 활자가 깨끗해서 알아보기 쉬우며, 수업 후에 스스로 강의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류는 속기 대필과 노트북 대필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속기보다 노트북을 이용하여 강의 내용을 대필해주는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속기 대필 vs 노트북 대필

현재, 대학에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노트북 대필제도는 봉사학점제나 근로장학생처럼 장학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전문인이 아닌만큼 강의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대필하기란 불가능하고 타자 속도에 한계가 있으며 엄청난 노동력과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한 결과 100% 다 대필해주는 건 불가능하고 아주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바 있다. 때문에, 매 강의 시간마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빠르게 대필 할 수 있는 전문 속기사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 속기사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마무리

속기 대필 서비스는 노트북 대필 서비스보다 월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지는 강의내용은 청각장애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인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구화(口話)를 사용하는 농인에게는 문자통역 서비스가 적절한 만큼 대학에서는 단순히 노트북과 봉사학생을 지원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 여러 대를 마련하는 비용으로 전문 속기사를 고용하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강의 자막 타입 서비스

● 필요성

수화통역 서비스와 문자통역 서비스가 아무리 각각 수화를 모어로 쓰는 농인과 구화를 사용하는 농인에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해도 어느 것이든지 한계점은 있기 마련이다. 수화통역 서비스는 의사 소통이나 정보면에서 실시간 전달은 가능하나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문자통역 서비스는 기록은 남길 수 있지만 100% 전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수화 중심의 농대학생과 구화 중심의 농대학생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최선의 방법

문자통역 서비스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모두 기록할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은 강의를 하실 때 표정, 억양, 제스처, 음의 고저와 길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의 효과를 높인다. 그래서 수강생들은 교수의 견해와 일반론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견해, 주관성과 객관성 등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까지 실시간으로 이해하면서 강의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타 학생들이 그만큼의 수업 효과를 누림에 있어서 청각장애 대학생은 그러한 면에서 많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청각장애학생은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상투적인 일반적 내용만으로는 강의 전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교수의 시원한 강의와 중간중간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사례나 일화의 소개까지 연관지어 깊이 이해하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공대생의 경우, 대부분 교수가 필기와 동시에 사물을 직접 지시하면서 강의를 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 따로, 필기 따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교수가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와서 이리저리 손가락으로 짚어 가면서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청각장애 대학생은 시각적 혼란에 매우 민감하다. 즉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수가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설명서에 있는 부품 내용을 잠깐 찾다 보면 어느새 교수가 다른 부분을 지시하시면서 다른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다. 그렇게 놓치는 부분이 참 많다고 한다. 교수가 무언가 지시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청각장애 대학생이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할 수 없고, 교수가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해서 일일이 수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진행을 잠

시 중단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 일반 학우에 비해 제대로 된 복습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그 날 그 날 강의한 내용을 녹화하여 자막을 입힌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 및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서비스는 모든 음성을 자막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내용을 입체적으로 생생히 이해할 수 있고 복습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강의 내용만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통역사의 통역도 같이 녹화해서 수화 중심의 농대학생과 구화 중심의 농대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마무리

강의 자막 테이프 서비스는 수화 통역, 문자통역 서비스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스템이다. 많은 노동력과 재정을 필요로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노트북을 기증받듯이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당한 이유와 함께 기증받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대학에서 배출하는 고급 인력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부수적인 학내 서비스 개선 요청안

*장애학생 지원센터 필요성

이 지원센터는 본부의 여러 부처와의 긴밀한 연관하에 장애학생 입학시부터 별도의 학업,생활, 취업 및 진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학업지원

- 장애학생 입학시 개별 면담이나 검사 등을 통하여 각 학생의 학업적 요구를 파악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요청서 또는 조정 요청서 등을 작성
- 학업 보조 인력(수화, 대필, 점역, 과제물 보조, 연구 보조 등)의 수급 및 지원을 총괄
- 학습보상 기자재(노트북 컴퓨터, 브레일라이트, 스크린 확대기 등)와 대체자료 변환 기자재(점자 프린터,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자막변환 수신기 등)의 수급 및 지원을 담당

- 장애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 학생지원과, 입학관리과, 총무과, 시설과 및 장애학생이 있는 학과(교수 및 조교)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업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
 - 수강신청한 과목의 담당교수에게 교육 및 지원 협조 통보
 - 졸업인증제를 위해 시행되는 글로벌 잉글리쉬 등 같은 이수불가능한 강좌에서 청각장애학생에게 대체과목로 개설, 수강신청시 우선 신청 허용)
- 원격강의 수강을 위한 장비나 시설을 지원
- 장애학생에 대한 장학금 관리, 또한 장애학생 도우미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
- 장애 이해를 위한 교양과목 개설

*생활복지지원

- 기숙사 입사에 우선권 부여
- 권익 옹호,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장애학생의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 장애인과 비장애인 친목을 다지는 장을 마련해주기
- 개인 위생, 의료 지원을 수행
- 보청기, 보장구 등의 수리, 대여 및 구입을 알선
-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
- 자원봉사자의 수급 및 지원을 책임짐

*취업진로지원

- 정규, 비정규적인 진로상담 실시
- 장애인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정보채널을 마련)
- 취업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인력배출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취업정보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공조 관계를 구축
- 취업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

*기타업무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개발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지침서 제작하여 보급(대상은 교수, 행정가 학생)
- 장애를 가진 교직원을 위한 지원도 담당
- 수화교실 실시

1) 도서관 책 대여 수 확대와 기간 연장

현재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책의 수에 한계가 있다. 청각장애 대학생은 그간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피드백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청각장애학생은 이러한 피드백 경험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많은 책을 읽고 다듬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청각장애 대학생의 평균독해 속도가 비장애학생에 비해 좀 느린 편이다. 게다가 어떤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관 주제를 다룬 서적들을 다양하게 탐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많이 빌리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막이 삽입된 비디오 자료가 별도의 코너로 설치와 수업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에는 자막이 삽입되어야 하는 제작, 수집, 대여 관리 담당은 도서관에서 한다.

2) 영어듣기 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

요즘 대학수학능력고사는 영어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듣기 평가를 필답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기본이고 시간도 1.5배 이상 할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별개 공간이나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배려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일단 가장 불이익이 많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든 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하고 기판토플 시험도 역시 듣기평가 항목을 필답고사로 대체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곧 수업과에서 해당 담당교수나 조교에게 연락 취하여 듣기 문항을 필답문제지로 대체하여 필답고사로 대체하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3)보청견 출입 허용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이 필수이듯이 청각장애인에게도 보청견이 필수다. 보청견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소리를 감지하고 주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교 내 화재나 위험한 상황에서 사이렌 소리 같은 경보를 듣지 못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에서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을 대신하고 있는, 꼭 필요한 보청견을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어디서든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학은 교내에서 농인이 보청견과 동행할 때 거부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만, 보청견은 주변상황에 따라 소음을 주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보청견이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

4) 학교 내 모든 텔레비전에 폐쇄자막 방송 수신기를 설치

5) 전화 서비스

- 팩스겸용 전화기 혹은 청각장애인용 전화기(문자전화기, 전자우편 가능 단말기, 영상전화, 음성증폭장치 등) 설치(서비스 담당자의 이메일주소와 수신 전화번호 병기)하고, 또 건청인과 농인간의 전화를 중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6)청각장애인이 이용 여부를 알수 있는 표시가 장치되어 있는 화장실

7) 노트필기와 컴퓨터 속기, 자막 제공 서비스

- 청각장애인이 중요회의나 세미나, 상담, 수업 등의 진행 내용을 실시간으로 자막 제공

● 결 론

청각장애 학생들은 비 장애학생들과 달리 그 특성이 각기 다르며, 교육적 지원 욕구도 다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은 비 장애학생과는 차별화를 두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실태와 대학생활에 수반되는 주요 문제점과 욕구 분석을 통해 향후 각 대학이 장애학생 지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청각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비 장애학생들과의 의미 있는 통합교육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농대연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대학에서는 대학행정 편의주의를 지향하고 한 명의 농아인이라도 교육의 권리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수화통역사, 대필자와 속기사를 이용한 수업방식의 채택 등, 그들에게 원활한 대학 환경 적응을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최소한 자신의 강의에 어떠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대학은 청각장애 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수업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검증된 유자격 수화통역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청각장애 학생들의 적절한 학습지원 방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대학교육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특례 입학제도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사후 관리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 여러 제도를 신설, 시행, 관리함으로서 그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 후에 겪어야 하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복지대책을 세우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이 홍 호
(노들야학)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이 홍 호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성인의 학력 수준, 가장 최저

○ 장애성인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관련 법적 근거 미비, 예산 부족, 낮은 인식 수준 등을 이유로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지 못했음. 특히 평생교육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평생교육법 내에 장애성인 관련 조항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진흥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었음.

○ 실제로 장애성인의 학력 수준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00)에 의한 연령별(표1. 참조) 재가장애인의 교육정도를 알아보면, 전체 장애인 가운데 51.6%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음.
- 이는 학령기에 제도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장애인들 중에 많은 장애인이 기본적인 한글과 수 개념을 익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비문해자로 방치됨)을 보여 줌.

<표 1> 재가장애인의 교육정도 — 연령별

(단위 : %,명)

교육정도	10세 미만	10~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전체
미취학	55.2	2.5	-	-	-	-	-	-	1.7
무학	1.4	2.4	4.7	6.6	6.7	13.9	25.0	58.1	21.5
초등학교	43.4	23.8	8.1	15.3	27.3	39.5	41.6	29.1	30.1
중등학교	-	29.8	12.5	13.9	20.4	18.4	12.7	6.6	14.2
고등학교	-	35.2	55.2	48.1	34.2	21.9	13.4	3.8	24.1
대학(3년제)	-	2.7	7.9	6.0	1.6	0.3	0.5	0.2	1.9
대학교 이상(4년제 이상)	-	3.6	11.6	10.1	9.7	6.1	6.9	2.2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전국 추정수	(98) 39,671	(150) 57,115	(248) 88,941	(516) 183,864	(664) 233,030	(701) 231,928	(847) 279,560	(899) 283,560	(4,123) 1,397,709

註: 무응답 2명 제외

자료 : 卞裕榮 외, 「2000年度 障碍人 實態調査」(서울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2001), p.333

- 최소한의 문해 능력(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셈하기 등의 한글 및 수학의 기초 과정 이수 정도)을 갖지 못한 학력을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기준을 정하면, 전체 장애인 중 51.6%, 즉 추정 장애인 140만 명 중 72만 여명의 장애인이 비문해(문맹)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전체 국민의 비문해 수준 8.4%(한국교육개발원, 2002)에 비해 6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장애인의 기초 학력이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줌.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발전계획 수정 등, 장애성인의 학교 교육 지원 대책 마련 시작

○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합의 사항 중 “초, 중등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내용에 의거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8일,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03~2007)”을 수정했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계획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 5년을 주기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특수교육 기초자료를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4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5년에는 “장애성인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함.
- 장애성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비, 야학운영비(학생수 기준), 교재·교구 구입비, 차량운영비” 지원방안을 검토함.
-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야학 등 장애성인 평생 교육 실태를 조사한 후 지원 방안을 강구함.

○ 이에 근거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성인장애인야학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장애인야학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 활발

○ 또한 지난 11월 19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제250회 정기국회의 제6차 교육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의원)에서 구노회 의원(열린우리당)과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안병영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성인장애인 교육 문제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질의한 바 있음.

- 당시 질의 내용에 따르면, 최순영 의원이 특별교부금의 사용 출처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금을 소외 계층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음. 이에 대해 안병영 장관은 특별교부금 중 정책사업비 항목을 통해 소외 계층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고, 곧이어 최순영 의원은 전국의 12개 정도의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을 이러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지 질의했음. 이에 대해 안병영 장관은 특별교부금 예산을 통해 장애인야학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더 살펴 봐야 되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장애인야학 지원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만을 그대로 전달했음.

- 구노회 의원 역시, 장애인야학 지원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면서, 이후 지원 계획에 대해 안병영 장관에 질의했음. 이에 대해 안병영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겠지만, 정책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했음. 뿐만 아니라, 구노회 의원은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야학을 직접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안병영 장관은 어렵다는

답변만 했음. 또한 구논희 의원은 공교육 기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 장애인야학에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안병영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했음.

○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회의 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내놓은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기존 특수교육발전계획(2004년 10월 8일 발표)에 의거해, 장애인야학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야학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2.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 사업의 형태로 장애인야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3. 장애인야학의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기관 등의 여유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

○ 그러나, 당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안병영 장관이 답변한 위와 같은 장애인야학의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정동영 교수의 발제문에 제시된 장애인야학 지원 방안 내용

○ 한편,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토론회 발제 중, 정동영 교수가 발제할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성인 교육의 현황·과제 및 대책”의 글에서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음.

- 정동영 교수는 장애성인 교육이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평생교육의 일반적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제고라는 궁극적 목표에 치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 장애성인 교육의 내용으로 정보문해교육, 인적자원 개발 교육, 시민교육 등과 같이 일반 성인 평생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비문해 장애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위협에 대한 보호교육, 자기결정과 자기주장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가로 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장애성인의 교육시설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벗어나, 학교 외의 학원, 복지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장애성인 교육 시설에 해당됨을 강조하고, 특수교육기관 역시 학령기 학생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음을 법 조항과 사례를 통해 제시했음.

- 그리고 특수교육기관이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 2항(순회교육 및 파견교육 부문)에 근거해,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과 인적자원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해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장애인야학 역시 특수교육기관의 파견학급으로 인가를 받아, 검정고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정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음.
- 정동영 교수는 나아가 장애인야학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음. 정동영 교수는 무학의 장애성인이나 초등학교 과정만을 졸업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야학은 특수교육기관의 파견학급으로 인가를 받아 학생에게 공교육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그 외에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은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인가·신고하여 학생에 대해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동영 교수는 장애인야학이 파견학급의 형태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면, 각 장애인야학이 교사를 확보할 수 있고, 차량운영비 및 학급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가 작성한 “200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4월 현재 특수학교에서 68개의 파견학급을 설치해 시설, 병원, 일반학교 등에 운영하고 있음. 또한 77명의 파견교사가 503명의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특수학급에서도 파견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6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501명의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음.

○ 그런데, 파견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순회교육 교사 배치와 마찬가지로, 중도·중복 장애로 인해 이동이 곤란한 가정·병원·시설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 교육 제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에도 명시되어 있음.)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순회, 파견 교육 지원을 학령기가 지난 장애성인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된 장애학생들에게만 국한시켜 지원하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장애성인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선정 방법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한 파견학급은 관리 주체가 해당 학교의 장

에게 있음. 즉, 장애인야학이 어떤 특정한 특수교육기관의 파견학급으로 지정되어 운영이 된다면, 이에 대한 관리의 권한은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장에게 있게 됨. 그러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특수교육기관이 장애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 공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일반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주체가 사립이라면, 파견학급 설치·운영과 관련해 해당 교육청에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실제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음.

○ 그러므로 파견학급 형태로의 전환은 관리 주체가 해당 시·도 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청이 아니라, 일선 특수교육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야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파견학급 형태로의 전환은,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장애성인 교육 지원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대안일 뿐임. 따라서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 자체가 장애성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장애인야학 등 민간주도형 장애인 교육 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에 더 주목을 해야 할 것임.

파견학급 형태가 아닌, 단계적 지원 방안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

○ 이에 파견학급 등으로의 전환 등,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에 국한시켜 장애인야학 지원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장애인야학 지원을 “준비 단계 → 과도기적 단계 → 실질 지원 단계”** 등으로 나뉘, 단계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제안함.

○ 우선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해, 장애인야학 지원을 정책 사업의 형태(예를 들어, 지원 기준 미비로 인한 지원 계획 수립의 애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된 장애인야학에 한해 “장애인야학 시범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국 장애인야학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야학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이미 진행한 장애인야학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교육진흥법 및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수행함. 이를 통해 실질 지원 단계에서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수립한 장애인야학 지원 기준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장애인야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

○ 위 내용을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음.

장애인야학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계획						
단계		준비 단계		과도기적 단계		실질 지원 단계
사업 내용	→	· 장애인야학 실태 조사 · 장애인야학 지원 계획 수립	→	· 장애인야학 시범 운영 · 장애인야학 지원 기준 마련 · 장애성인 교육 지원 및 장애인야학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작업	→	·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야학 전면 지원
사업 시기		2004년도 하반기		2005년도		2006년도

○ 장애인야학 지원을 위해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현재 약 14곳의 장애인야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성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장애인야학에 대한 단계적 지원 방안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시한 것임. 최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드높아 지고 있고, 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이전에 비해 많이 향상됨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집밖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재가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찾고 있으며, 특히 사회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교육 부문에 대한 욕구 수준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이들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이들은 장애인야학과 같은 민간주도형 장애인 교육 기관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임. 따라서 장애성인들을 위해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야학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 문제는 그동안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관심을 쏟지 못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상의 측면에서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함.

장애성인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성인 당사자들의 요구 사항

○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야학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

- 지난 11월부터 진행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인야학 실태조사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조사한 12개 장애인야학 중 조사 가능 장애인야학은 약 10여개 정도로 추정되며, 관할 시·도 교육청 역시 8개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실태조사 방법이 현지 답사·인터뷰·사례 조사 등 구체적이지 않고, 설문조사 방법을 선택해, 장애인야학 운영 일반 정도로 한정시켰음. 조사 대상이 소수이고, 조사 내용이 간단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실태 조사 기간은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길게 진행되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는 실태조사를 완료해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야학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기를 요구함.

○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성인 교육 문제를 교육복지심의관 산하의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동영 교수의 발제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장애성인의 교육 문제를 인적자원개발국의 평생학습정책과에서 평생교육 담당 인력이 담당하는 것보다, 교육복지심의관의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특수교육보건과에서 장애유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장애인의 교육 정책을 생산하는 기구로서 역할해야, 일관된 장애인 교육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그렇지 않고 평생학습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되면, 일반 성인 교육에만 정책이 집중되어, 장애성인의 교육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음. 뿐만 아니라, 장애성인의 교육은 평생교육 일반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내용 이외에, 학교 교육과 연관된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특수교육보건과가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임. 또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도 추가로 배치해, 장애성인 교육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장애인야학 등의 교육 기관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는 안병영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을 것.

- 안병영 장관은 장애인야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정책사업의 형태로라도 장애인야학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음. 이에 근거해, 특수교육진흥법 및 평생교육법 등 장애성인 지원 조항 마련은 내년도 의원발의 또는 정부발의 형태로 진행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과도기 단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해, 장애인 야학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안병영 장관이 약속한 장애인야학의 공간 제공 문제에 대해, 어떠한 교육 기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장소 제공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안병영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예산 중 일부를 소외 계층의 교육 지원 사업에 유용하게 쓰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2005년도 예산에 장애인야학 지원 예산이 빠져 있는데, 가능한 지원 예산을 특별교부금 예산 중 일부로 편성해, 장애인야학에 대한 직접 지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성인 교육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가칭)장애성인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할 것.

- 평생교육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장애인복지전문가, 장애인 교육 관련 단체 대표자, 장애성인 당사자,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장애성인교육 지원을위한TFT”를 구성해, 장애성인의 평생 교육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이 TFT를 통해, 특수교육진흥법 및 평생교육법의 개정 문제와 관련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성인교육(평생교육 및 야학을 중심으로)

정 인 숙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장애인 성인교육(평생교육 및 야학을 중심으로)

정 인 숙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국가차원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준상(2003)은 평생교육을 인간의 배움 본능을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끝까지 실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배움의 과정으로 보고, 평생교육을 모든 이를 위한 ‘앎’, 모든 이를 위한 ‘쓰’, 모든 이를 위한 ‘높’으로 규정하였다. 장애인일수록 평생교육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교육이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04년~08년)’에서조차 장애인부문에서는 학령기¹⁾만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래사회는 평생학습사회여야만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시대적 변화와 패러다임의 이동으로 웰빙을 향한 삶의 질 제고가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중요시되면서, 단지 경제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에 가까운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은 매우 의의가 깊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일례로, 정인숙(2003)의 정신지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 받고 싶은 내용은 일상생활교육·여가활동, 취업알선·상담, 직업교육, 경제적 지원 순으로 나타나, 교육에 대한 욕구가 경제적 지원보다 앞서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의의가 깊다고 본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 다양한 시각으로 장애성인 교육의 현황·과제 및 대책을 발표해 주신 정동영 교수님과 전국 장애인 야간학교 협의회의 필요성과 결성을 발

1)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추진계획에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의 세부사항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활성화, 교수·학습여건조성 및 지원, 편의시설 확충, 대학 장학제도 개편 및 확대 항목만이 수록되어 있다.

표해 주신 오용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자는 평생교육 및 야학 등 장애인 성인 교육에 관해 논의 하고자 한다.

1. 일반인 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거가 필요하다.

정동영교수의 장애성인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교육시설과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시설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일반평생교육시설을 모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포함하였다.

평생교육시설의 분류준거에 나타난 시설들을 보면,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학교는 물론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학원,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 고용지원시설 등이 모두 장애성인 교육시설에 포함되며,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고용지원시설 등도 모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포함된다. 따라서 장애성인 교육시설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만이 아니라 학원, 수련시설, 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모두 장애성인 교육시설에 해당하며,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학원, 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등도 모두 장애인 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제 4장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시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분류해 보면 마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은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이웃에 있는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싶어 왔으니 교육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당연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교

육받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며, 소위 우리가 장애인이라 일컬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감히 일반 평생교육기관에 가서 교육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반 평생교육기관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라 일컫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편의시설 증진법'과 같은 최소한의 준거를 통해 시설적인 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수준의 '장애성인 평생교육과정'과 같은 교육의 질적인 면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준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준거들을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마치 어른들의 교육과정에 아무런 배려없이 '어린이는 불가하다'는 표시가 없으므로 어린이도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키가 작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층수의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어린이에게 받침대라도 놓아주지 않고, 알아서 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2. 인적자원개발국에 속해있는 평생학습 정책과에 장애인 평생학습 담당을 두고, 국립특수교육원의 부설기관으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어야 한다.

정동영교수의 장애성인 교육체제 부분을 살펴보면, 장애인 성인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정책심의실의 교육복지심의관 아래 특수교육보건과, 인적자원개발국의 평생학습정책과,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을 두고 평생교육체육과를 두고 있으며, 시·군·구교육청에 학무국 초등교육과에 특수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를 두고, 학무국의 평생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업무 담당장학사를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복지심의관 아래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 시·도청의 보건복지 여성국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시·군·구청에 복지과를 두고 있다. 노동부는 중앙에 장애인고용과를 두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음을 기술하면서 장애성인 교육은 중앙행정부처 각 부처의 장애성인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조정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전달체제를 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주장하며, 장애성인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 장애성인 교육 업무와 장학기능을 부과할 것과 장애성인 교육 전담인력 배치를 주장하였다.

이 주장도 전적으로 동감하며 매우 주요한 의의가 있다고 사려된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에서 관장하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수교육보건과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구체적인 과제(예: 성인장애인의 실태조사, 야학의 실태, 일반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접목, 재가 성인장애의 평생교육 수요조사,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및 중재 등)을 수행하고, 각 지역의 기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체제에 형식적으로 맡겨둔다면 학령기 교육에 밀려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평생교육기관들과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내에는 일반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과가 있으며, 교육개발원내에 평생교육센터가 있다. 평생교육센터는 교육부가 평생교육법(법률 제 6003호)에 의거하여 2000년 2월 15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한 평생교육 종합 지원 추진기구로서, 평생교육센터는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평생교육법이 부여한 고유의 임무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수집 제공,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의 협력,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위탁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제시한 평생학습 진흥 종합계획모형에는 ‘취약계층평생학습강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적으로 평생학습 종합계획 구성영역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평생교육진흥, 기업평생교육활성화, 노인교육활성화 등 다양한 발전전략 비전이 있지만, 장애인평생교육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방법 면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고용의 유지, 일상생활에 관한 교육, 독립생활을 위한 지원, 여가생활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내용에서 일반인과 차별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시설면(엘리베이터, 유도블럭 등)에서의 지원, 교육매체(점자, 확대경, 수화, 특수컴퓨터 등의 보조공학)에서의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하므

로 특별한 지원이 없이는 일반인 평생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포함하여 작게 다루기보다는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을 독립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 평생교육을 위한 ‘과’ 단위의 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평생교육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현재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내 평생학습 정책과에 장애인평생교육담당 전문직을 두고, 국립특수교육원의 부설기관으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분산되고 흩어져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체제를 총괄하면 현재의 체제만으로도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일반인 평생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평생교육센터(교육개발원)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에 놓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지원,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도 이러한 센터 조직만 갖춰진다면, 현재 산재해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이 서로 협력 지원할 수 있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일반인만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을 장애인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여 함께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를 알지 못해 평생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과 개인을 연계해 줌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도별 성인장애인교육기관이 49개²⁾로 파악<부록1 참조>되었으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구한 전환지원 안내자료(2002, 김형일 외)에 수록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시·도별 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10개)³⁾,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문화센터(66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25개)으로 대별하여 101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78개이다.<부록2 참조>

정인숙(2003년)의 정신지체학교 5개교 졸업생 176명(가정, 시설, 그룹홈 거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지역문화센터,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협회 등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오래 다닐 수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어디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몰라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성인교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사·도별로 조사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2004년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과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178개가 설치되어 있다.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실무자와 강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자 간의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동영교수의 장애성인 교육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애성인교육은 역량강화의 시대에 시설중심과 서비스 중심 패러다임으로 장애성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장애성인 교육이 질보다 양이라는 현실적 기회 제한 때문이며, 장애성인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이 시설중심 패러다임이나, 역량강화 패러다임이나를 논할 여지가 없었으며, 질의 문제를 제기할 체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장애성인 교육은 분명히 기회확대라는 양적문제도 해결해야 하나, 동시에 역량강화라는 질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대학입학률이 90%를 넘어섰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많은 정보를 예전보다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는 개별화된 교육의 방법으로, 수요자 중심의 개개인에게 적절한 수준과 필수적인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전체적으로 집약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마다 질적인 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연수와 관계자들 간의 정보교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들의 연수프로그램의 새로운 개발과 연수프로그램의 시행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4. 재가장애인의 51.6%에 달하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재가장애인과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재가장애인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학교가 마련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용균 대표의 장애인 교육은 정부의 책임 있어 부분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원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장애인 야학을 '평생학습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루어져야 성인장애인들의 교육권을 회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평생학습원'으로의 인가보다는 가능하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보다 원활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설립을 주장하고 싶다. 우선 학령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과거의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특수학교가 지역에 없었거나 일반학교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아서, 교통수단이 없어서 등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육의 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의무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은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은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 재가장애인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재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안학교'를 제도권 안에서 필요에 따라 야간에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고 '월반제도'를 실시하거나, 우수한 학생들은 '검정고시'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학력을 높이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본다. '대안학교'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를 야간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선 설립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된다면, 재가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관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야학의 문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토론에 덧붙여 토론자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일반인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을 2%~3%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한 개 과정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장애인의무교육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두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4조 제1항)고 법률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에 있어서도 일반인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을 2%-3%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한 개 과정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장애인의무교육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청의 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자료의 평생교육 수혜자의 학력을 보면,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 4.5%, 중학교 졸업자 7.5%, 고등학교 졸업자 16.8% 대학교 이상 졸업자 39.6%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에서의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자연히 교육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관계자들의 공허한 외침에 머무를 수 있다. 이제 시대적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로, 고용이나 경제에 못지 않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나 배움의 문제가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 온 현 시점에서 언제까지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니며, 고용과 문제와 함께 해결해 나아가 할 과제이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은 일반인의 평생교육과 함께 가야한다. 장애인은 언제나 차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함께 태어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죽어간다. 그러므로 일반인 먼저라는 인식은 바뀌어야 하고, 일반인과 동시에 공공의 차원에서 실제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저절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인 평생교육에 포함되어 행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정인숙, 2003).

2. 일반인 평생교육 관계자들에게,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을 반드시 평생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이해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장애인교육 관계자들에게도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 평생교육도 아직 첫걸음의 단계라 말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 관계자들에게서조차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한국성인교육학회(2001)의 봄 학술대회에서 ‘한국장애인성인교육의 새로운 모형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2003년 6월에 열린 ‘참여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탐색’을 주제로 열린 평생교육학회의 교육정책 포럼에서 ‘소외집단을 위한 평생학습기회 확충’이란 소주제로 장애인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논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돈민(2003)은 평생학습 행정지원체제는 장애인, 빈곤층과 저임금 노동자 등 낮은 사회·경제적 집단, 여성, 중고령자,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기초기능 미소지자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사람이 교육·훈련의 기회 및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발표한 정도에 불과하며, ‘2004년 제 31차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의 연차대회’의 소주제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이라는 주제가 있었으나 장애인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장애인 평생교육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운영하기에는 선결과제가 너무 많다. 또한 장애인 관계자조차도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얼마나 절실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형일 등(2002). **장애학생 전환과정 지원방안연구**.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정인숙(2003). **정신지체 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최돈민(2003). **평생학습 행정지원체제**. 한국평생교육학회,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 탐색교육정책 포럼 자료**.
- 한준상(2003). **참여정부의 평생교육 비전과 정책방향**. KEDI 교육정책포럼,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 탐색교육정책 포럼 자료**.

<http://kosis.nso.go.kr>

<http://www.moe.go.kr>

<http://ncle.ke di.re.kr>

<부록 1> 시·도별 성인장애인 교육기관 설치 현황

시 도 (행정구청 수)	현 황			
	교육기관 수	교사 수	등록학생수	수료생(검정고 시합격생)
서울시(21개)	없음			
부산시(16개)	없음			
대전(5개)	1개(서구)	78명	57명	11명(9명)
광주(5개)	3개(동구, 북구, 남구)		37명	14명(9명)
울산(5개)	2개(중구, 남구)	9명	71명	5명(2명)
대구(8개)	1개(동구)	10명	13명	18명(8명)
경기도(31개)	31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 평택, 군포, 고양, 남양주, 구리, 오산, 파주, 광주군, 하남시, 포천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시흥시)	215명	1,364명	0명
강원도(17개)	없음			
충청북도(13개)	없음			
충청남도(15개)	없음			
전라북도(14개)	1개(익산시)	1명	20명	5명
전라남도(22개)	9개(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구례, 해남, 함평)	112명	365명	98명
경상북도(24개)	없음			
경상남도(20개)	1개(통영시)	3명	30명	0명
총계	49개	428명	1,957명	151명(28명)

<부록 2>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현황

시 도 (행정구청 수)	현 황	
	센터 수	설치장소
서울시(21개)	6개	교육청 1개 특수학교 5개
부산시(16개)	10개	특수학급 설치학교 6개 특수학교 4개
대전(5개)	2개	교육청
광주(5개)	2개	교육청
울산(5개)	2개	특수학급 설치학교
대구(8개)	4개	교육청
경기도(31개)	25개	교육청 19개 특수학급설치학교 6개
강원도(17개)	17개	교육청
충청북도(13개)	12개	교육청 7개 특수학급 설치학교 4개 특수학교 1개
충청남도(15개)	8개	교육청 4개 특수학교 3개
전라북도(14개)	10개	특수학급 설치학교 9개 특수학교 1개
전라남도(22개)	29개	교육청 21개 특수학급 설치학교 1개 특수학교 7개
경상북도(24개)	25개	교육청 23개 특수학교 2개
경상남도(20개)	26개	교육청 6개 특수학급 설치학교 14개 특수학교 6개
총계	178개	

장애인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활성을 위한 국가정책

정 동 일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장애인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활성을 위한 국가정책

정 동 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장애를 지닌 학생 및 성인들의 욕구나 그 대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즉,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최근 장애인 당사자, 부모 및 종사자, 관련자들의 요구 또한 매우 증대되고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나라 및 사회에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과 장애를 지닌 아동, 성인에 대한 교육지원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장애학생·성인에 대한 교육·복지·노동·문화 등 삶의 전반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 중의 하나인 사회적 소외계층, 교육적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복지, 교육복지는 국가 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 또한 이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충만하게 형성되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금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장애유아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공론화 형성과정의 기회 마련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장애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은 다른 일반인의 교육과는 다른 추가적인 지원이 다양함을 인지할 때 교육인적자원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의 정책 담당자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본다. 특히 금번 발제 주제는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교육과 복지, 취업 등은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주된 교육목표·내용·방법·지원에 통합·조정·협력해야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장애인 고등교육의 질과 성인 교육지원의 정책 및 공감대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으

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소의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발표한 세분의 발제 내용에 대한 고등교육, 평생교육, 야학에 대해 순차적으로 토론자로서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닌 검토 수준으로 토론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또한 미약하나 그동안 정부에서 관련 교육정책으로 추진해 온 사실들에 대해 소개하며 모두의 이해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장애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해 모두가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축적된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이 매우 미흡하였기에 금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방향 및 대안 제시에 생산적인 비판이나 주장의 논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 발제 1.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교육 정책의 추진 경과 및 최근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차별 보상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5년이다. 도입 원년인 '95년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해 8개교 113명에서 '04년 현재 72개교 424명으로 매우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체 359개교의 중 20%에 불과하고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32개 대학 중 8개 대학에 불과하며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특별전형 실시교가 전무한 실정이며 일반전형에 있어서도 지원자의 사전 상담 및 입학에 따른 각서 징구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실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은 외부 매개 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내부시설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승강기·경사로·리프트 등 설치 비율은 59.9%이며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비율은 3.6%로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기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외 발제자가 제시한 대부분의 장애인 고등교육의 문제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밝혀진 문제점은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로 본다.

둘째, 정부의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추진 경과

1995년 장애인 대학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이후 2001년까지 뚜렷한 정책 지원이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단, 1998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당시 특수교육정책과를 통해 직속 기관이 국립특수교육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방안(김동연외 1인, 1998)’에 대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여 장애 대학생의 교육적 욕구와 대학의 교육지원 실태, 외국의 고등교육 지원실태 분석을 통해 대학 행정의 지원체계 확립과 역할, 학습 활동에 관한 지원, 대학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 장애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 진로 및 산학협동 관계망을 통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후 2002년에 대학재정지원 평가지표에 학생기숙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포함토록 하였고 대학장애인을 위한 대학시설 평가기준을 마련 정책 연구를 시행하여 전국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노동부와 협력하여 대학 전공별, 장애등급별 장애학생 현황 파악 및 직업육구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대통령 주요업무 보고 내용으로 대학내 장애인교육 복지 실태평가,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방안을 수립 추진함을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월 발표하여 향후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 계획에서는 고등교육기회 확충, 교수학습지원, 편의시설 확충의 3대 부분과, 장애인의 특별전형 확대, 선발대상 장애유형 확대, 대학입학 기반 확대,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체계 구축, 장애관련 활동지원 강화,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제공, 생활 및 진로지도 강화, 신설대학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기존대학 편의시설 단계적 확충 등 9개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003년 2월에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에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정하고 한국재활복지대학 운영의 효율화,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평가제 시행, 대학 장애성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의 정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특수교육 당사자 및 종사자, 관계자의 요구 분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특수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수정 발표한 정부의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에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장애인 특별전형 활성화, 이료전문대학 과정 운영을 위한 구체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는 미흡하나만 종합적으로 장애인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이다.

셋째,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개선 방안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개선 방안으로 발제자가 제안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개선, 대학내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과 교내 학교생활의 이동 및 시설 접근지원, 교수-학습지원, 학교생활 및 복지지원, 취업 및 진로지원” 등 분야별로 제시한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 방안으로 제시한 “장애인 고등교육 관장 부서 설치,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체계 개발 및 보급, 기본 지원 설비 확충 계획 및 예산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평가에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하며 모든 개선 방안들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조기에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그간 정부에서 추진 해온 사항과 발제자가 제시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현 시점의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할 국가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재활복지대학 운영 지원 강화

한국재활복지대학은 국내 최초로 장애인 고등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동 대학이 장애인 고등교육의 정체성 확립 요람이 되고 모든 대학에 장애대학생 지원 체제·내용·프로그램 운영 등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특별 지원으로 현재의 운영을 강화해나간다. 즉, 입학, 학습·평가지원, 학교생활 및 복지지원, 취업·진로지원 등에 대한 교내 지원내용·방법·절차·체제 구축 및 모형 개발 등에 따른 조직과 인력, 예산의 특별 정책지원을 강화해 갈 것이다.

둘째,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

발제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장애인 특별 전형제도는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제공으로 이들의 전문직 종사, 사회적 신분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경과하면서 “고학력 실업자 양성, 중도 탈락자, 대학 수학능력 저하, 장애인 특혜 입학으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자격지심” 등 도출된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당초 제도 시행 취지였던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에 따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전반적으로 재조명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갈 것이다.

셋째,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교육인적자원부, '04. 8)의 차질 없는 추진

지난 8월에 발표한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수·학습지원을 위해 '09년까지 60억원을 편성하여 3,000명을 지원하고, 3개 대학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국립대학 등 70교에 장애인 시설설비 지원, '05년 장애인 지원 실태 평가 실시, 대학 및 전문대학 평가 총점의 5% 설정 등을 통해

대학 간 지원을 강화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직제의 구체화 및 전담 전문인력 재배치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의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한 장애인 대학 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실시된 지 8년이 지난 2002년에 와서와 실질적인 정책적인 관심이 구체화되었다고 보며, 국가의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 장애인 중심 고등교육기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2003. 3)'의 설립과 정부 주도 장애인 복지 지원 실태조사('03),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 및 지원 종합대책('04)이 그간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추진에 대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1995년부터 장애인 고등교육 문제 해결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전문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장애인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은 2명(행정사무관, 6급 행정주사)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들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등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발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장애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학생 학령기 교육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에 장애인 고등교육 문제를 추가 부과하여 종합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교육보건과를 '특수교육정책과(가칭)' 및 '학교건강정책과(가칭)'로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애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령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특수교육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보건과에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 담당자를 증원(특수교육 전공 연구관·연구사)배치하고 장애인 고등교육 업무를 부과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야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정책과(가칭)'의 전문인력 증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발제 23 :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성인 야학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

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한 삶 영위’을 추구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최대한의 정책을 집중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누구나, 언제, 어느 곳에서든 충분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금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개선안 제시 및 공론화 과정은 매우 큰 의의와 새로운 전기의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장애성인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시설·교육방법 등에 대한 학문적 체계 및 철학배경, 국내 현황 분석 및 과제, 장애성인 평생교육 정책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체계적으로 제시한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또한 전국 장애성인 야간학교 지원의 필요성·타당성·정책대책 대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는 바이다.

이러한 전제와 함께 발제자들이 제시한 평생교육 및 최근 국가정책 지원의 관심을 요구하는 장애성인 야학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국가 정책의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은 그간 국가정책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1)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 추진경과

일반인의 평생교육이 1990년 초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사용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이다. 즉, 국가 수준에서 정책적인 관심을 가진 시기인 2001년도에 와서 교육인적자원부 직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 방안 연구(정동영외 2인, 2001)’가 가장 최근의 추진 사항이며, 동 연구 추진과정에서 관련자 중심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번이 두 번째의 공론과정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애성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결과이며 평생교육법(법률제6400호)이나 특수교육진흥법(법률제06742호)에서도 장애인 평

생교육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그동안 학령기를 지난 장애 성인에 대해 교육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순회교육등)에서 학령기가 지난 장애성인의 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그간 시각장애 성인을 위해 이료재활과정 설치, 정신지체 및 지체부자유 성인을 위해 시설 파견학급 설치, 순회교육 등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정보문해교육, 인적자원 개발교육, 시민교육 및 장애로 인한 특별한 교육적 요구인 여가·고용·주거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생교육이 아닌 의무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문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에서 세부적으로 설정한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마련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에서 장애성인 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 발달장애성인의 요구에 적절한 독립생활·여가생활·취미생활 등의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제공을 정책추진과제를 제시하여 ‘04년 현재 대학의 평생교육원(이화여대, 대구대학교)에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다소나마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수정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으로 일반성인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성인 교육프로그램 지원, 야학운영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정책과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정책 연구에 장애성인 지원을 포함토록 하였다.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대한 발제자가 제시한 장애성인 교육체제, 교육시설 확충,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육지원 강화 등에 대한 정책대책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나, 이 모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두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은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 이외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각 부처가 함께 협력·통합·조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들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을 근간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성인 평생교육 담당 전담부서 및 직제 설정

현 정부 직제에서는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대한 직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서로는 인적자원개발국에 평생학습정책과, 특수교육보건과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육보건과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지원 등 학령기 장애학생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평생학습정책과에는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정책 등 운영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업무를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담당 부서 및 정책의 부재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성인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전달을 위해 발제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으로 특수교육보건과가 분리되어 ‘특수교육정책과(가칭)’로 신설되는 만큼 동 과에 장애성인 평생교육 업무를 부과하여 장애학생 교육과 성인교육을 동시에 부과하여 생애단계별로 정책지원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물론 장애인 고등교육과 마찬가지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 개편과정에서 이에 대한 전담인력 배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실존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의 정책적 결단이 이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에도 장애학생 교육지원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장애성인 평생교육업무도 함께 부과하여 장애학생 교육과 연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장애성인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중앙행정부처 및 자치단체의 기관간 협력 체제 구축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내용이 정보문화교육, 인적자원개발, 시민교육 및 생활분야별 여가, 주거, 취업 등 추가적·지속적인 평생교육 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행정부처 및 자치단체의 기관간 협력 체제가 구체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복지조정위원회에 장애인 교육·복지·노동·문화·정보·건축 등 관련한 부처간 장애인 지원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축하고 있어 이미 종합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실제적으로 정책기획 단계 및 추진과정에 실무수준에 보다 원활한 협력·조정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간 실제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즉, 부처간 특수교육 및 성인교육을 위한 예산 공동 부담제 적용 등 및 부처간 장애인 교육·복지·노동 정책 수립 실무협의체 구성, 자치단체별 장애인관련 기관간 실무협의

체 구성 등을 향후 추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미 동 사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관련부처에 정책 추진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이다.

셋째, 일반성인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성인 프로그램 개설 지원

장애학생 및 장애성인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인의 행복한 삶의 영위'라는 전제로 볼 때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장애인이 분리된 환경에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및 친지, 또래들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제한된 환경과 최대한 일반인과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사회통합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학생도 최대한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장애성인 역시 일반과 함께 하는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장애성인을 위한 분리된 평생교육 시설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가능한 일반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에서 장애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일반성인 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지원인력만 추가로 배치하면 대규모의 시설이나 국가예산 부담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일반성인 평생교육시설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넷째,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 및 야간학교 지원 대책

이제 장애성인을 위한 야학 등 장애성인 평생교육 문제를 민간단체나 개인에만 맡기는 시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의 책무성 및 정책의 부재로 장애성인 야학 등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이 2004년 현재 12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대부분의 기관은 설립자 자신의 재산이나 및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운영의 부담을 가지는 등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유사 기관의 난립을 예방하고 장애성인 평생교육 문제를 국가 및 자치단체의 주도·지원·공공기관 조직체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을 분석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성인 교육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이미 추진 중인 장애성인 야학기관의 실태 조사('04. 12)와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직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한 '장애성

인 평생교육기관 종합 실태조사·분석'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부터 시·도교육청을 통해 장애성인 교육 확대를 위해 현행 141개 특수학교의 운영기능을 강화하여 시설 및 가정의 장애성인을 위한 파견학급 설치, 순회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토록 행정지시 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등에서는 학령기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보다 장애 청년, 장애노인 등 장애성인을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정책 협력을 강구할 것이다.

이상으로 토론 주제인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 추진사항 및 방향을 대강적으로 제시하였다. 금번 주제 발표자의 제안들 대부분은 장·단기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며 또한 정책대책은 교육인적 자원부와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공동 정책 개발 및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예산이 수반되어진다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여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만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정부조직에서 장애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담당할 명확한 직제와 기능, 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합의 및 관심을 통해 오늘의 정책 대안들이 실현되어 장애인 누구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개인의 행복한 삶이 추구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사회가 구축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으면 한다.

장애인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연속 토론회

1차: 영·유아기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호·향상 방안과 쟁점

가. 일시 : 2004. 11. 29(월) 14:00

나.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다. 내용

○ 사회 :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 발제

- 발제 1 : 장애아동의 학령전 조기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조광순,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발제 2 : 유상조기특수교육기관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정환, 한국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 이사

○ 토론

-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송주한, 곡교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부모

- 영·유아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과제

김명숙, 가락유치원 원장

-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과 보육권 확보를 위한 제언

김치훈, 구립 영3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인 교육권연대 정책국원

- 사설 조기교육기관의 인·허가 문제에 관하여

안수경,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

- 학령전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

김은주,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교육연구관

- 장애아 보육 현황 및 정책

이정심, 여성부 보육기획과 서기관

2차: 학령기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호·향상 방안과 쟁점

가. 일시 : 2004. 12. 7.(화) 14:00

나.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다. 내용

○ 사회 :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 발제

- 발제 1 : 통합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경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 발제 2 :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현황과 과제

문상중, 광주선명학교

○ 토론

- 장애아동 학부모 : 최두희

- 장애아동 학부모 : 윤종술

- 장애인 시설 운영자 : 조규환, 은평천사원

- 일반 학교 특수학급 : 변부경, 성내초등학교

-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질적 제고방안 : 강경숙, 국립특수교육원

- 학령기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 : 권택환,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